

## 이윤택 성폭력사건 대응의 의의와 쟁점 토론회

# 분노가 지나간 자리, 다시 무대에 서다

- 일시 : 2019년 11월 26일(화) 오후 1시30분 - 4시
- 장소 : 예술가의 집(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 주최 : 이윤택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139개 단체, 104명 공동변호인단)

# 순서

시 간	세 부 사 항
사회 : 이현숙(탁틴내일 대표)	
1:30-1:40	개회 및 인사나누기
1:40-1: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발제 1 : 생존자들이 이끌고 공대위가 밀고 나아간 활동의 의미</b></li> <li>- 이미경(본 공대위 활동가,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li> </ul>
1:55-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발제 2 : 이윤택 사건 판결의 이해와 의미</b></li> <li>- 서혜진·장경아(본 공대위 공동변호인단)</li> </ul>
2:10-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발제 3 : 2차 피해와의 전쟁, 피해자 권리와 일상찾기</b></li> <li>- 이명숙(본 공대위 공동변호인단)</li> </ul>
2:25-2: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발제 4 : 여성혐오와 위계의 공모를 깨는 피해생존자의 감각</b></li> <li>- 이산(본 공대위 활동가,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활동가)</li> </ul>
2:40-2: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발제 5 : 생존자의 관점에서 만들어보는 연극계의 문화, 규정</b></li> <li>- 김수희(공동고소인단)</li> </ul>
2:55-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발제 6 : 내가 지나온 수사·재판과정, 그리고 정의</b></li> <li>- 이재령(공동고소인단)</li> </ul>
3:10-3: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정토론</b></li> <li>: 김영옥(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상임대표)</li> <li>: 장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li> </ul>
3:40-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종합토론</b></li> </ul>

# 목 차

## ■ 발제 · 토론문

발제 1 생존자들이 이끌고 공대위가 밀고 나아간 활동의 의미 .....	4
발제 2 이윤택 사건 판결의 이해와 의미 .....	25
발제 3 2차 피해와의 전쟁, 피해자 권리와 일상 찾기 .....	33
발제 4 여성혐오와 위계의 공모를 깨는 피해생존자의 감각 .....	46
발제 5 생존자의 관점에서 만들어보는 연극계의 문화, 규정 .....	56
발제 6 내가 지나온 수사재판과정, 그리고 정의 .....	60
토론1 이윤택 성폭력사건 대응의 의의와 쟁점 토론 .....	65
토론 2 이윤택 성폭력 사건 판결의 의의와 향후 변화를 위한 고민 ...	70

## ■ 부록

1. 1심 이후 기자회견 성명서(2018. 9. 19) .....	75
“그 ‘연극’은 달라진다”	
2. 항소심 이후 기자회견 성명서(2019. 4. 9).....	77
“오랜 관행’이 아니다. 성폭력이다.”	
3. 상고심 판결 이후 논평(2019. 7. 24) .....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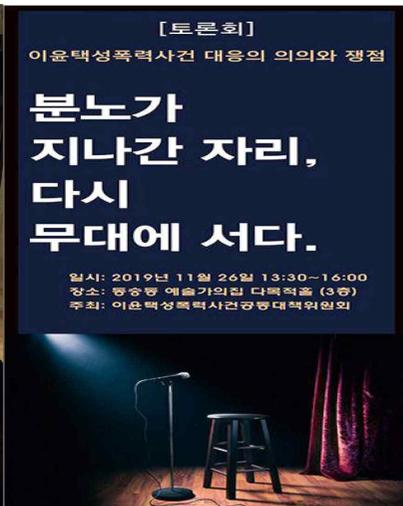
[발제 1]

# 생존자들이 이끌고 공대위가 밀고 나아간 공대위 활동의 의미

이미경(이윤택성폭력사건공대위,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생존자들이 이끌고, 공대위가 밀고

- 이윤택사건 공대위 활동을 돌아보며 -



이미경(이윤택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WIDGANS UNIVERSITY

## 순서

1. 이윤택의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의 말하기, 변화의 시작
2. 이미 달라진 세상 – 미투(Me Too), 혁명
3. 공동변호인단, 공동대책위 활동으로 단단한 연대
4. 모두의 노력 : 연극인, 시민들의 탄원서 & 전문가 의견서
5. 이 사건 대응이 남긴 것과 남은 것



## 미투운동, 피해생존자들의 말하기

- 극단미인의 김수희 대표  
페이스북에 이윤택의 성폭력 사실 게시(2018. 2. 14)
- “(#미투는)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여성들의 목소리”(김수희)
- 이어지는 피해생존자들의 말하기(speak out) .....
- 미투운동은 우리사회에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을 촉구



##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

공개사과(2018. 2. 19. 서울 명륜동 30스튜디오)

- “그동안 저에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정말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제 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포함하여 그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시 한 번 피해 당사자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연희단거리패 출신들과 단원들에게도 사죄드립니다. 선배 단원들이 항의할 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매번 약속을 했는데 번번이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연극계 선후배님들께도 사죄드립니다. 저 때문에 연극계 전체가 매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 당사자 분들에게 사죄드립니다. 피해 당사자분들의 상처를 위로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사죄합니다”(사과문 전문)
- 성폭행 사실 부인(“성관계는 했지만 성폭행은 아니다. 피해자가 몇 명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제 더러운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다. 18년간 이어진 나쁜 관습..피해자의 말을 믿고 존중하지만 **감제는 아니다**”)



## 30년 전, 여성차별.성폭력 질타하던 영화의 원작/각본, 이윤택 무엇이 그를 성폭력범으로 만들었을까?

- 성추행범 허 절단한 사건 영화화(1990)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 이 영화의 마지막 자막  
“피해자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여성들에게 이 영화를 바칩니다”
- 이윤택 - 1991년 대중상 각본상/시나리오
- 이러한 성폭력이 지속.가능할 수 있었던 연극계의 성차별적이고 위계적인 문화! 제왕적 구조... 부추기고 종용하는 사회. 권력관계에 의한 구조적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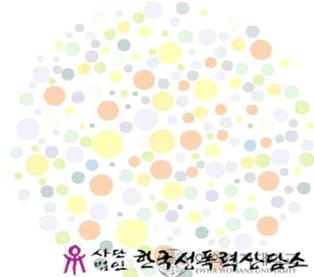


\* 사진출처 :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1485>



## 미투(#Me Too)운동 그 이후, 피해자가 말한다!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공동책임위원회 기자회견

- 일시 \_ 2019년 3월 5일(월) 오전 11시
- 장소 \_ 서울지방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 주최 \_ 이윤택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사회 \_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내용
  - 경과보고\_ 서해진(공동변호인단)
  - 발언1 \_ 배복주(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장애여성공감 대표)
  - 발언2 \_ 이명숙(공동변호인단)
  - 발언3 \_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발언4 \_ 이산(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활동가)
  - 발언5 \_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발언6 \_ 김수희(공동고소인단, 극단미인 대표)
  - 발언7 \_ 이재령(공동고소인단, 극단 콩나물 대표)
  - 발언8 \_ 홍선주(공동고소인단, 연극인)
  - 질의.응답 및 향후 계획 \_ 사회자와 공동변호인단



## 달라진 세상(1)

### 강남역 10번출구 포스트잇... (2016. 5. 17)

- 여성혐오.차별.폭력의 고리를 끊는 연대와 성찰의 계기로!
- 37,109장의 포스트잇 <http://www.genderarchive.or.kr/exhibits/show/postit/ex2-p5>



### 달라진 세상(2)

##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 젠더에 기반한 폭력부분, 2018. 3. 9 -

- 형법 297조 개정(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부부간간죄 명시
- 가정폭력 상담조건 기소유예 폐지하여 화해와 중재 사용 금지하고 형사처벌 받는 것 보장 등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형사소송 남용(무고, 명예훼손 역고소 등)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 취할 것
- 피해자의 성적 배경을 사법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 금할 것.
- 온라인 플랫폼 및 온라인 배포자에 대한 상당한 재정적 제재 및 예방조치 강화
- 직장내 성희롱 사례에 대한 예방과 효과적인 관리 및 감독 체제 확립
- 공공기관에서의 성폭력 범주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보장, 위한 엄격한 비밀보장
- 탈북여성들에게 적절한 상담 위한 자원 제공



### 달라진 세상(3)

## 미투, 혁명이 일어난다!(2018년)



달라진 세상(4)

“불편한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 (2018년 혜화역 시위)

**불법촬영  
편파수사**

남자가 당하면 포털 실검  
여자가 당하면 야동사이트 실검

최근 5년 불법촬영물 게재자 16,201명 중 15,662명(96%) 남성  
1인에서 발급형, 집행유예 등으로 물러난 게재자 비율 10명 중 9명(86%)

cafe.daum.net /hongdaenam | 일시: 18. 06. 09  
장소: 혜화역 2번출구 앞 푸른공간 연세센터

**남자에겐 화장실  
여자에겐 불법촬영장**

사진출처:  
<https://www.google.co.kr/search?q=%E8%B6%9888%...>

“불편한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

나의 일상이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

윤정희  
권민서

달라진세상(5)

광장의 2만 시민, 위력성폭력 인정!  
(2018. 8. 18.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최 집회)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 성폭력 사건 [대법] 판결 기자회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이제는 끝내자!**

발사 장소 2018. 08. 08 (월)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 주최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삼원 한국성폭력상담소

달라진 세상(6)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2019년)



**이윤택 성폭력 사건의 진행 과정(1)**

- 2018. 2. 14. 피해자 1명 SNS에 최초 피해사실 게재
- 2018. 2. 19. 이윤택 감독 기자회견 열어 사과 & 성폭력 혐의 부인
- 2018. 2. 22. 피해자들과 일부 변호사들 최초 면담
- 2018. 2. 26. 공동변호인단 구성
- 2018. 2. 28. 피해자 16명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접수  
(고소 죄명: 상습 강제추행, 위력에 의한 간음 등)
- 2018. 3. 2. 피해자들 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 2018. 3. 5.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개최(서울지방변호사회관 정의실)
- 2018. 3. 14. 피해자 1명 추가 고소장 접수
- 2018. 3. 8. ~2018. 3. 16. 피해자 17인에 대한 경찰조사 완료
- 2018. 3. 18. 피고소인 이윤택 소환, 피의자 조사 완료
- 2018. 3.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윤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 이운택 성폭력 사건의 진행과정(2)

- 2018. 3. 22. 변호인단 기자회견 개최 (서울지방법원변호사회권 정의실)
- 2018. 3. 23. 피해자 4명 중앙지방검찰청에 추가고소장 접수
- 2018.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운택 영장실질심사 진행, 구속영장발부
- 2018. 3.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사건 송치
- 2018. 3. 29. 서울중앙지검에 임사라변호사 고소  
(고소 죄명 :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
- 2018. 9. 19. 이운택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선고  
(징역 6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 취업제한)
- 2019. 4. 9. 이운택 서울고등법원 2심 선고  
(징역 7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 취업제한)
- 2019. 4. 17. 임사라변호사 대전지방검찰청 기소유예  
(죄명 :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
- 2019. 7. 24. 이운택 대법원 상고기각 원심 확정
- 2019. 11.26(\*오늘). “분노가 지나간 자리, 다시 무대에 서다” 토론회

이운택 성폭력상담소

법정에서 우리를 공분하게 한 피고인측 변호인의 말말말...

## 부인, 합리화, '피해자다움'의 요구

(\* 시민 방청연대 & 공대위 활동가들의 증인지원, 신뢰관계인 동석)

- 피해자 증언 시 가림막 뒤 피고인 헛기침의 의미
- “완성도 높은 연극을 만들자는 과욕이 빛은 불찰”,
- “연기지도”, “안마지도”, “극단 내 독창적 연기기술 지도 방법” ...
- “만약 이씨의 연기지도가 성추행으로 인정된다면 앞으로 독창적인 연극예술계의 씨가 말라버릴 것”
- “어떻게 (추행)순서가 기억 안 나나?”
- “왜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나?”
- “피해를 입고도 계속 거기 있었던 것은 앞으로 어떤 추행도 감수하겠다는 것이었나?”
- “왜 바로 얘기(문제제기) 안했나?”
- “피해 후에도 페이스북에 따듯한 시선, 말을 담았더라. 왜 그랬나?”



이운택 성폭력상담소

## 이어진 2차 피해에 변호인단 적극 대응

- 임사라 변호사, 피해자들 “꽃뱀”으로 비유 명예훼손으로 고소 - 기소유예 - 재정신청 중

- 악성 댓글러 105명 고소
  - 개인별로 벌금형,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 처분
  - 한 재캐나다 피고소인은 한국에 입국할 때 문제가 되므로 급 사과와 함께 합의의사 보내오기도 함.



## 성폭력의 '상습성' 입증방안 긴급집담회(2018. 7. 23)

- 사회 : 이명숙변호사
- 발제 1 : 현행법상 성범죄 관련 상습범 처벌규정의 문제  
..... 최수영 · 장경아(변호사)
- 발제 2 :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의 상습성  
..... 김현숙 연구원(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토론회 주요내용>

- 이윤택성폭력 사건 : 1999~2017년까지의 성폭력 62건 고소. 검찰은 2010년 4월 15일 이전 사실관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하고 23건, 피해자 8명에 대한 상습강제추행을 인정, 1명에 대한 유사강간치상 혐의 인정하여 기소.
- 상습범 규정(형법 305조의2) 신설 전후에 걸쳐서 피의자의 습벽의 발현인 강제추행행위들이 이루어진 경우, **상습범 규정이 신설된 2010. 4. 15. 이전 강제추행 행위에 대하여도 상습범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
- 상습범은 범죄의 습벽을 갖춘 자가 반복하여 동일한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범죄가 습벽의 발현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여러 개의 범죄를 상습범이라는 하나의 죄로 중하게 처벌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포괄의죄설이 타당**



재판부에 제출한

## 공동대책위원회 1차 의견서 (2018. 7. 24)

- 피고인은 다수의 수상경력과 작품 제작 경력으로 연극계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이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폭력을 계속 은폐해왔습니다.
- 몇몇 피해자들이 언론 제보와 경찰과의 연락을 시도한 바 있으나, 그 때 마다 제보 사실은 묵인되거나 피고인에게 알려졌습니다. 지역 사회와 언론이 피고인이 인지도 있는 작가이자 연출자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범죄를 방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적극 활용하였던 것입니다.
- 또한 피고인은 제보 사실을 알아낼 경우 단원들을 위협하고 자신에게 저항할 경우 어디에서도 연극작업을 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십 년에 이르는 범죄 기간 동안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단원들에게 폭력과 모욕, 협박을 가해온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주시어 엄중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소속 극단의 선배 단원들이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제보와 신고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극단을 떠나야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폭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수십 년에 이르는 범죄가 결국 고소인들의 용기와 결단으로 법에 제재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인 스스로도 시인한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습벽이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충분한 형량으로 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권국선 폭력상담소

재판부에 제출한

## 공동대책위원회 2차 의견서 (2018. 9. 11)

- 피고인은 행한 성폭력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이뤄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커녕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등 그 죄질을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고인 이윤택이라는 연출가가 연극·예술계에서 지닌 위력을 살피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판결을 통해 누구보다 연극을 사랑하고, 배우로서 꿈을 키워온 수많은 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회복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십 년에 이르는 범죄가 결국 고소인들의 용기와 결단으로 법에 제재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인 스스로도 시인한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습벽이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충분한 형량으로 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의 재판 결과는 누구보다 연극을 사랑하고, 배우로서의 꿈을 키워온 수 많은 피해자들에게 치유와 일상의 회복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사회에서 힘있는 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도록 하는 지침이 될 것입니다.

상한 권국선 폭력상담소

재판부에 제출한

## 공동변호인단 의견서 (2018. 9. 17)

- 현 연극계에서 피고인이 가지는 지위는 가히 독보적인 수준이며, 연희단의 실질적 수장으로 연희단 내에서 가히 제왕적 권력을 가졌다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항의를 한 사람들을 단원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욕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일도 빈번하였는바 대부분의 단원들은 피고인의 말에 복종을 해야 하는 수직적, 상하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피해자들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를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이 이루어진 상황이 비록 연기지도 과정이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들이 당했던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은 연기연습, 발성, 호흡연습이나 지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과연 피고인만의 호흡법이나 발성법과 같은 이윤택 매소드가 연극계에서 인정받았는지도 의문이며, 존재하였는지도 의문입니다.
- (피해자들이)피고인을 고소한 이유는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합당한 판결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삼천 권국선독력상담소

재판부에 제출한 전문가 의견서 : 김혜리교수(국민대 예술대학 연극전공)

## 모두의 노력 (2018. 8. 16.)

- 외부의 물리적인 압력(주로 연출가의 신체적 접촉)이 가해져야 연기나 발성이 좋아진다는 논리는 피교육자의 자율성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권위적인 교육관에서 생성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발성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호흡 상태를 보기 위해서 누군가의 몸에 손을 대야 한다면, 횡격막이 움직이는 범위, 즉 배꼽 위쪽과 명치 사이에 손을 댍니다. 호흡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꼽 아래의 내장 기관을 만지거나 성기에 손을 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사람은 연출가나 선생이 아니라 배우 자신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 방법을 제시하고, 훈련에 대한 피드백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연기와 발성 지도의 기본입니다.
- 경우에 따라 지도하는 과정에 신체적인 접촉이 요구되기도 하지만, 선생이나 연출이 본인의 작위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배우나 학생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해를 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연기교육의 기본 - 신체접촉과 방법의 사전설명, 동의의 범위, 불편함 이야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 마련)
- 교육과정에는 반드시 검증된 교육범위가 제시되어야 하고, 상호간의 인권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삼천 권국선독력상담소

## 모두의 노력 (2018. 7.)

- 재판부에 제출한 연극인 및 관객 탄원서 총 98부
- 2018.7.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94부 제출
- 2018.7.31. 우편으로 4부 추가 제출
- 강명주 강수혜 강애심 강유미 강윤지 강하나 구자환
- 김기일 김로사 김명식 김민지 김보은 김상보 김서진
- 김선희 김성미 김소연 김수정 김신록 김신혜 김정은
- 김태희 김효상 나희경 남인우 마두영 문재호 민새롬
- 박삼병 박성연 박소진 박영희 박지아 박하늘 방혜영
- 배선희 백승무 변영후 부새롬 서나영 설유진 성지수
- 손상원 송경화 안창환 양동탁 양현경 염상애 윤정환
- 이래은 이선희 이연주 이정모 이정화 이지은 이진경
- 이현수 이호원 임선영 임인자 장윤정 장희정 전강희
- 전문영 전송이 정아름 정진세 조성희 조아라 최민경
- 최샘이 최윤우 최진아 최하은 최희범 하재성 한철훈
- 홍은지 외 20인



유 삼한 관극성폭력상담소 연극인지원연구소

##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1) 모두의 노력 (2018. 7.)

- 안녕하세요, 재판장님. 저는 '000'이라는 극단을 운영하고 있는 연극인입니다.
- 피고인이 최고의 연극연출가로 추앙받는 존재였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곧 좋은 선생님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피고인은 그동안 '연극'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자신이 곧 '연극'이라고 생각하고 그 '연극'을 무기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알려진 지금에도 조금의 반성도 없이 '연극'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연극'은 그 무엇보다 '사람'을 위한 것인데 말입니다.
- 몇몇 사람들이 피고인의 감형을 위한 탄원서를 썼다는 말도 들립니다. 그들에게 피고인은 정말 최고의 연극 연출가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라고 쉽게 연결지어져서는 안 됩니다.
- 피고인의 성폭력 사건은 문화예술계 내에서 큰 파장을 불러왔고 이 사건의 판결 역시 앞으로 다른 성폭력 사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연극'이라는 일터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재판장님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윤택의 연극'이 아닌 '모두의 연극'이 진짜 '연극'이니까요.

유 삼한 관극성폭력상담소 연극인지원연구소

##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2)

# 모두의 노력 (2018. 7.)

- 안녕하세요. 재판장님. 저는 연극을 하고 있는 000 입니다.
- 피고인 이윤택의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연극인의 한 사람으로 탄원드립니다.
- 피고인 이윤택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단원들에게 압력을 가했고 성폭력범죄를 가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길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피고인 이윤택에 대한 처벌은 한 개인에 대한 처벌만은 아닙니다. 권력의 오남용으로 손상되었던 연극이堂堂하게 인간의 감정을 말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할 예술이 사람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권력자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다는 것에 슬픔을 느낍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과 진실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법 또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살인 권속성 폭력상당소

##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3)

# 모두의 노력 (2018. 7.)

- 안녕하세요. 재판장님. 저는 000이라는 활동명으로 연극과 영화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입니다.
- 저는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연극배우를 열망하는 20대를 보냈습니다. 십 수 년 전 자신을 돌이켜 보건데, 그 열망은 가족, 돈, 결혼, 의식주의 안정을 비롯한 인생에서 중요한 모든 요소와 맞바꿀 정도의 크기였습니다...(중략)...
- 현재의 제가 편안히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단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연극계는 지뢰밭이었습니다. 예술이라는 미명하에 성희롱·성폭행에 준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었습니. 연극계에 발을 들이고 나서, 어떤 극단에는 상습적으로 추행이 이루어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곳이 바로 제가 갈 수도 있었던 연희단 거리패였습니다. 처음에는 소문이라니 생각했습니다. 이어지는 미투 게시글을 읽으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 저는 나이가 들어 연극을 시작하고, 주로 노역을 하면서 어쩌다가 지뢰가 없는 곳을 주로 밟으면서 살아왔을 뿐입니다...(중략)... 그래서 저는 증인석에 서는 많은 배우분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못 도와드려서 죄송한 마음으로 지내다가, 탄원서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중략)...미투 운동이 우리 개개인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십 대가 된 제가 이십 대의 저를 돌이켜봤을 때 그 사회가 얼마나 야만적이었는지를 생각하고 거기서 살아남은 것이 괴롭고 부끄러워지는 일이 현재의 젊은 배우지방생들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피고인 이윤택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며 이와 같이 탄원합니다.

살인 권속성 폭력상당소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4)

## 모두의 노력 (2018. 7.)

- 존경하는 재판장님, 탄원인은 2003년부터 연극계에서 전문기자로 활동해 왔으며, 현재까지 연극계에서 많은 연극인들을 만나면서 창작활동의 과정과 작품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글로 담아내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 많은 연극인들이 피고인 이윤택의 범죄 행위에 분노하며 경악하는 것은 첫째, 그 순수한 연극의 과정을 악용하여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명백한 사실이며, 둘째, 그것이 창작방식이 하나라고 사실을 왜곡하며 변명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며, 셋째 수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심 있는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 무엇보다 연극인들이 이번 사건의 판결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수십 년간 감춰졌던 성폭력으로부터 벗어나, 비로소 자유로운 창작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본 사건의 고소인단이 그런 시작을 열었습니다. 이들을 지지하는 수많은 연극인들과 함께 탄원인 역시 고소인단의 용기에 깊은 감사와 지지를 보내면서, 다시 한 번 간곡히 이번 재판의 결과가 고소인단이 내놓은 용기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피고인 이윤택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인 권속성 폭력상담소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5)

## 모두의 노력 (2018. 7.)

-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연극인의 한 사람으로 이번 이윤택 성폭력사건에 있어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 어렸을 때 배우길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뉴스 보고 있노라면 억울함이 답답함이 곰팡이처럼 퍼져나가 분노로, 증오로 커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 권력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데 법의 잣대가 평등하지 않음을 절실하게 피부로 느낍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저런 판결을 받아?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저런 판결을 받아? 그럼 나도 그런 잘못을 저질러도 그런 판결을 받겠네? 나도 그런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 이상 없겠네? 이런 생각 하고 싶지 않지만 제 안에도 억울한 곰팡이들이 퍼졌는지 이런 생각들이 그냥 쏟아집니다.
-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모여 이 사회의 속 색깔이 만들어 집니다. 이미 이 사회는 억울한 곰팡이가 퍼질 대로 퍼져서 검정에 물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 이번 고소인단이 정말 용기를 내어 색깔을 바꿔보려고 힘을 냈습니다. 힘과 권력이 없는 이들 이지만 이런 사람들도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속 색깔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한번이라도 살 만한 나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기준으로 판결하시어 이 사회의 검정을 잘라내 새로운 감정을 만들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살인 권속성 폭력상담소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6)

## 모두의 노력(2018. 7.)

- 안녕하세요. 재판장님. 저는 연극 기획/연출하는 000입니다.
- (중략)...김수희 연출의 용기 있는 증언 이후, 그동안 이윤택이라는 명성이라는 이름에 억눌려, 연희단 거리패 동료와 단체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당위에 억눌려 말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또한 많은 연극계의 부당한 폭력에 대해 많은 연극인들이 이것은 잘못된 일이며 폭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세상에 고발하고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그러나 용기있게 세상에 말하기 시작한 이들에게 다시 세상은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품행이 잘못되었다, 피해자 때문이다, 왜 이제와서 이러는가 라고 말하고, 범죄 이유를 피해자들에게 덧씌우며 2차 가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은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정에서 '연극'이라는 이름으로, '연극'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정당화한다는 뉴스를 보고 더욱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존경하는 재판장님,
- 연희단 거리패 구성원들에게는 소중한 '연극'의 이상적인 시절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극을 향한 열정과 소중한 시간들 속에서 이윤택씨가 연극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한 폭력이 용인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들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폭력으로 이루어진 시간들에 대한 합당한 책임 역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연극선폭력상담소

##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2018. 9. 18)

- 사건번호 : 2018고합362 유사강간치상, 상습강제추행  
2018초기1821(병합) 보호관찰명령청구
- 주문 : **징역 6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취업제한**
- 재판장 판사 황병헌 / 판사 김수민 / 판사 김주영
- 검사 : 손진욱(기소, 공판)
- 공판 : 1차 공판- 2018. 5. 9 / 2차 공판- 2018. 5. 25 / 3차 공판- 2018. 6. 20  
4차 공판- 2018. 6. 25 / 5차 공판- 2018. 7. 2 / 6차 공판- 2018. 7. 9  
7차 공판- 2018. 7. 11 / 8차 공판- 2018. 7. 16 / 9차 공판- 2018. 7. 23  
10차 공판- 2018. 7. 27/ 11차 공판- 2018. 8. 13 / 12차 공판 : 2018. 8. 27  
13차 공판- 2018. 9. 7 / 14차 공판(선고) : 2018. 9. 19

서울 연극선폭력상담소



## 2심 :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2019. 4. 9)

- 사건번호 : 2018노2658 유사강간치상, 상습강제추행  
2019노531(병합)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018보노20(병합) 보호관찰명령
- 주문 : **징역 7년,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취업제한**
- 재판장 판사 한규현 / 판사 권순열 / 판사 송민경
- 검사 : 손진욱(기소, 공판)
- 공판 : 1차 공판 : 2018. 12. 4 / 2차 공판 : 2018. 12. 18  
3차 공판 : 2019. 1. 8 / 4차 공판 : 2019. 1. 22  
5차 공판 : 2019. 2. 26 / 6차 공판 : 2019. 3. 21  
7차 공판 : 2019. 3. 26 / 8차 공판(선고) : 2019. 4. 9

사단 한국성폭력상담소  
법원 한국성폭력상담소

## 이윤택 항소심 (6년형 + 1년형) = 7년형!



## 항소심 선고 후 공대위 기자회견



## “오랜관행”이 아니다. 성폭력이다.

연극연출가 이윤택 성폭력 사건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 일 시 \_ 2019년 4월 9일(화) 오후 1시 50분 선고공판 직후
- 장 소 \_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 주 최 \_ 이윤택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사 회 \_ 최란(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장)
- 내 용
  - 경과보고\_ 사회자
  - 발언1 \_ 김수희(극단 미인 대표)
  - 발언2 \_ 이백재령(음악극단 콩나물 대표)
  - 발언3 \_ 정윤희(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대표)
  - 발언4 \_ 이현숙(탁틴내일 부설 성폭력상담소 소장)
  - 재판부의 판결요약과 비평 \_ 서혜진 (본 사건 공동변호인단)
  - 시민 자유발언 \_ 기자회견 참여자 중 1~2인
  - 기자회견문 낭독 \_ 조은희(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 \_\_\_\_\_한선희(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향후 계획 \_ 사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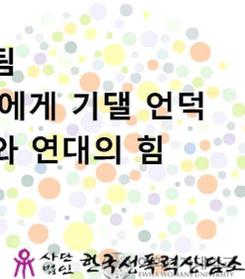
## 3심 : 대법원 제1부(2019. 7. 24)

- 사건번호 : 2019도4772
  - 가. 유사강간치상
  - 나. 상습강제추행,
  -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원심 확정!)
-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권순일 / 대법관 이기택 / 대법관 김선수



## 이 사건 대응이 남긴 것

- 세상을 바꾼 피해자들의 ‘필사적인’ 말하기의 힘
- 감히 건드릴 수 없었던 문화예술계의 권력에 대한 저항  
꿈과 인생을 건 문제제기
- 고소 → 기소 → 유죄확정으로 이어진 인권, 정의의 ‘승리’
- 고소인단의 지속적이고 단단한 연대
  - 매 수사과정, 재판과정에 함께하기
  - 일상을 나누며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가 됨
- 104명의 공동변호인단의 조력은 고소인단에게 기댈 언덕
- 139개 단체로 구성된 공대위 활동의 지지와 연대의 힘
  - 기자회견, 방청연대, 토론회, 탄원서.....



## 이 사건 이후, 풀어갈 과제

- 피해자들의 온전한 치유 & 일상으로의 복귀  
“분노가 지나간 자리, 다시 무대에 서다”
- 이윤택의 성폭력이 지속될 수 있었던 문화 예술계의  
뼈아픈 성찰과 변화의 노력
  - 영화, 연극의 감독, 배우,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인권규약 마련 및 실천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폭력예방교육의 의무화
- 예술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연극, 영화계 일상 문화 조성

함양 권국성폭력상담소



감사합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 인권감수성을 키우는 사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

함양 권국성폭력상담소

---

[발제 2]

## 이윤택 사건 판결의 이해와 의미

서혜진·장경아(본 공대위 공동변호인단)

---

### 이윤택 사건 판결의 이해와 의미

2019. 11. 26.

공동변호인단 변호사 서혜진, 변호사 장경아

2018년 2월 사건의 시작

"이윤택, 여자단원에게 안마시켜"...연극계도 '미투' 확산

김 박고은 기자 | "그는 갑자기 바지를 내렸다"...연극계 번지는 '미투'

한상현 기자 | 2018-02-14 09:58:21 | 사회일반

공공 댓글 0 개

## 연출가 이윤택도 성추행 추문...연극계 미투 확산

"가슴 만지고, 새벽에도 안마 요구"  
'연극계 대부' 이윤택 성추행 폭로 이어져

"발성 연습한다며 성추행"...연희단거리패 "이윤택, 감독직에서 물러나"

이윤택 연출, 성추행 의혹... 김수희 대표 '미투'로 드러난 공연계 민낯

‘성추행 의혹’ 이윤택 “반성, 근신하겠다”

[단독]"성추행 의혹' 이윤택 연출가 반성하며 활동 중단"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2018-02-14 10:18 송고 | 2018-02-14 12:37 최종수정

### 수사과정\_ 피해자들의 용기, 그리고 피해진술

이윤택의 상습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에 대한 고소장 접수와 시작된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

총 23명의 피해자들의 이윤택으로 부터 입은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진술

피해자들 모두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피해진술  
오랜기간 지속된 피해, 서로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한 피해  
이윤택의 측근으로부터 계속되는 압박과 회유

## 공판과정\_피고인 이윤택의 주장



- 피해자들은 연희단거리패를 장악하고자 하는 어떠한 세력에 의하여 매수 당한 것이다, 피해진술이 왜곡되고 과장되어 있다
- 내 연극은 '신체를 이용한 발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나는 연극 연출가로서 연기지도를 위하여 배우들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것에 불과하다
- 내가 받은 안마는 강제추행이 아니다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연기지도 행위로서 정당한 행위이다

## 2018년 9월 제1심 판결 선고, 피고인 이윤택 징역6년

"징역 6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10년간의 취업제한"

**상습강제추행 -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에 대하여 폭행으로 강제추행하였음이 인정됨**

"소리 연습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기마자세로 서게 한 다음 연기지도로 빙자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서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신체부위 일부를 만지고 자신의 신체를 밀착한 행위, 노래 연습을 하다가 고음 부분에 이르자 "여기에 힘을 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행위, "연기를 하려면 약간 비성적 상태가 필요하다, 나한테 너를 맡겨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입술 주위를 혀로 핥은 행위, "발성이 약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움켜잡은 행위, 피해자로 하여금 골방에서 안마를 하게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한 행위 "소리가 유두 쪽으로 빠린다고 생각하고 소리를 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유두를 뺨 행위 등...

## 2019년 4월, 항소심 판결 선고, 피고인 이윤택 징역 7년

"징역 7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10년간의 취업제한"

1심에서 증인 출석하지 못한 피해자의 증인 출석, 병합된 사건의 유죄 인정(업무상위력강제추행)으로 형량이 높아짐

<이윤택의 항소심에서의 주장 요약> :

- ①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안마행위를 한 것일 뿐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없다
- ②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은 연극 지도행위일 뿐이었으며 강제추행이 아니다,
- ③ 피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가 없다, "성기"가 아닌 "성기 주변"을 안마하게 한 적은 있는데 원심 판결문에는 "성기주변"이라고 기재되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

## 강제추행의 "상습성" 인정 법리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음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887 판결)

형법상 상습강제추행죄가 신설된 **2010. 4. 15.** 이전의 행위로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 고소가 없는 행위 또한 상습성 발현의 지표로 삼을 수 있음

## 이윤택의 강제추행의 "상습성" 인정 근거

- ① 피고인이 8명의 여자 배우를 18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점,
- ② 피해자들이 기소된 범죄사실 이외에도 특정하기 어려운 수많은 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 ③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여자 배우들은 연희단거리패 단원들 또는 피고인이 연출하는 연극에 출연한 배우들로서 모두 피고인의 상당한 영향력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점,
- ④ 피고인은 단원들에게 안마를 하게 하면서 추행을 하였고, 배우들에게 연기지도 또는 발성지도를 하면서 추행을 하는 등 유사한 방식의 추행을 오랜 기간 반복한 점,
- ⑤ 피고인의 추행을 문제 삼아 단원이 퇴단하거나 피고인이 단원들에게 공개사과를 하는 사건이 2회 이상 있었음에도 비슷한 방식의 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인정함

## 법원이 배척한 피고인 이윤택의 주장

- ① 적절한 연기지도였나? (일명 이윤택 메소드) **X**  
; 피해자들과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지도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동의 또는 수인할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신체접촉 행위였음
- ② 사회통념상 강제추행이 아니었나? **X**  
;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충분히 평가됨
- ③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나? **X**  
; 충분한 고의 인정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이성으로 하여금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사타구니 부위를 주무르게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안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가 알아챌 겨를 없이 순식간에 한 일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그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도록 그의 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고, 그 행위의 내용 또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다....”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피해자들,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까지 진술하고 있어 허위로 보기 어렵다.....추행 당시의 상황, 입었던 의상, 피고인이 했던 말, 위치, 자세, 이후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그 구체적 진술 내용이 일관되어 있고 이를 목격한 다른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피해에 대하여 단원들에게 알리면 집단을 해하는 자로 인식될 것 같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추행과는 별개로 그때에는 피고인이 멱저보였다든 상반되 감정 및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진술하였다.....피해사실 외의 사소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다소의 기억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 2019년 7월, 대법원 판결 선고, 피고인 이윤택 징역 7년 확정

“피고인 이윤택의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원의 판단 > :

상습강제추행죄 등에서의 추행의 성립, 증거능력, 증명책임, 인과관계 등 법리 오해 및 이유모순 등이 없음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기각

## " 권력형 성폭력"의 특성을 모두 보여준 이윤택 사건

- 가부장적 의식구조의 발로
- 가해행위의 지속성, 반복성
- 피해자에 대한 생사여탈권
- 수사와 재판 이후에도 미치는 가해자의 위력
-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지위
- 피해자에 대하여 가해지는 끊임없는 2차 피해

## 나가며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는 전형적 권력형 성폭력 범죄입니다. 문화예술계 내 존재하는 고질적 병폐인 권력 내지 지위에 의한 성폭력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있어왔고, 또 지금도 계속되어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예술행위를 이해해야 한다, 예술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잘못된 통념과 편견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피고인을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지난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이는 예술에 대한 모독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하지 않아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나라 예술에 대한 모독이 될 것입니다. 예술은 창조활동으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결국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예술작품이 인간의 인권을 말살하고 범죄로 탄생한 것이라면 과연 이것을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지 피고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

2018. 9. 17. 피해자 변호사들의 의견서 중 일부

# 감사합니다

## 2차 피해와의 전쟁, 피해자 권리와 일상찾기

이명숙(본 공대위 공동변호인단)

---

### 1. 미투운동과 이윤택 사건의 의미

이윤택 사건은, 지난해 2월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해 우리 사회에 뜨겁게 달구었던 미투운동('#Me Too', 이하 '미투운동'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적인 사건이자, '미투운동 첫 실형선고'로 잘 알려져 있다.

이윤택 사건은 2018. 2. 14. 피해자 중 1명이 sns에 피해사실을 최초로 알린 이래 수많은 피해자의 폭로가 잇따르게 되었다. 가해자는 이윤택 1명인데 피해자는 23명에 이르러, 이윤택으로 인한 미투운동 피해자들을 위하여 2018. 2. 26. 101명의 공동변호인단이 구성되었고, 이후 3명의 변호사가 더 합류하게 되어 104명의 변호인단이 23명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이들 변호인단은 이윤택을 상대로 '상습 강제추행, 위력에 의한 간음'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 함께 하는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하게 되었고, 이윤택을 상대로 형사고소나 민사 소송이 진행된 곳도 서울 부산, 일산 등으로 다양했고, 2차 피해로 인한 형사고소사건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인천, 경산, 일산, 제주도 등 전국의 수십군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거쳐, 전국의 거의 모든 검찰청에서 사건이 진행되었다.

또, 피해자들이 소속된 '연희단거리패'내의 평소 여성단원들 사이에 '조심(?)해야 할 3샘(이샘, 하샘, 곽샘)'으로 불리워졌던 이윤택, 하용부, 곽도원에 대해서도 모두 미투운동이 일어나고, 직,간접적으로나마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게 되었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차 피해의 가해자인 105명의 악성댓글러 및 임사라 변호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하였다.

또, 이들 피해자들의 미투운동이 지닌 상징적인 의미 등을 이유로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민우회 등 전국 139개 단체로 이루어진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고소 전 단계에서부터 대법원 판결선고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하였고, 4차례에 걸친 기자회견도 가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상세히 알려지면서 이윤택에 대한 폭발적인 국민적 공분과 함께 피해자들은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시종일관 뜨거운 지지와 격려를 받게 되었다.

이처럼 이윤택사건은 미투운동 중 '가장 많은 피해자', '가장 많은 변호인단', '미투운동 최초의 실형 선고', '가장 많은 민형사 사건 파생', '2차 피해에 대한 가장 적극적이고 많은 법적 대응', '가장 많은 수사기관에서의 피해 조사', '가장 많은 수의 공동대책위원회 구성과 지원', '전국민들의 공분과 뜨거운 격려와 지지', '임사라변호사로 인한 미투운동과 꽃뱀 논란 촉발'등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윤택사건과 관련된 법적 대응 및 쟁점, 2차 피해와 문제점 등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 2. 이윤택 피해자들의 미투운동과 법적 지원 현황

이윤택 사건의 피해자들 중 형사 고소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23명에 이르렀고, 이들이 진행한 이윤택, 하용부, 광도원의 연예기획사 대표인 임사라, 악성 댓글러 등을 상대로 한 민,형사 등 법적 절차와 진행 및 그 결과는 아래 도표와 같다.

### << 이윤택 사건 관련 법적 진행 현황 >>

항목		소송 결과	비고
1	이윤택 형사고소 건 (유사강간치상, 상습강제추행)	최초 형사고소 : 2018. 2. 28. 이윤택 구속 : 2018. 3. 23. 서울중앙지검 기소 : 2018. 3. 28. 1심 : 2018. 9. 19 선고 징역 6년,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2심 : 2019. 4. 9 선고 징역 7년,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확정

		3심 : 2019. 7.24. 선고 상고기각으로 2심 판결 확정됨	
2	임사라 형사고소 건 (명예훼손/모욕)	- 임사라변호사 고소 : 2018. 3. 29. - 대전지방검찰청 : 2018. 3. 29. 기소유예 처분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 : 2019. 7. 6. 항고기각 - 피의 사실은 인정 동종 전과 없고, 게시글이 사실에 기초한 점, '꽃뱀' 추정 내용 포함했으나 곧 삭제한 점, 대전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다수의원들이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함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의결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 - .2019. 7.24.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 (2019초재486) (현재 계류 중)	대전지검 :기소유예 (2019.4.17)  대전고검 :항고기각 (2019.7.6.)  * 재정신청 :계류 중
3	이윤택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건	- 이윤택을 상대로 서울중앙법원 민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피해자가 많아서 2개의 사건으로 나누어서 진행 중 - 가명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재판부에서 피해자 특정을 위하여 실명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여 실명으로 전환함 - 2019.11.7. 의정부지원에서 18년 전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처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기대하고 있음 - 성폭력범죄 관련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법제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램 - 형사사건에서 가명으로 조사를 받고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가명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법제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램 - 현재 소송계류 중	계류 중
4	이윤택 부동산 가압류건	- 이윤택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진행함 - 피해자들을 가명으로 가압류신청하였으나 가압류 이행시의 집행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실명	가압류결정

		<p>으로 신청할 것을 요청하여, 다시 실명으로 신청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사사건에서 가명을 사용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으면 이에 부합하게 가압류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실명 대신 가명으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성 대두됨</li> </ul>	
5	<p>임사라 대한변협에 진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호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원</li> </ul> <p>변호사 활동 중 소속변호사회에 검직허가 없이 유한회사 대표이사 취임함으로써 검직제한규정 위반함(변호사법 제38조 위반)</p> <p>공개적인 SNS에 자신을 성범죄 전문성 있는 변호사라 밝히면서, 이윤택 미투의 피해자들이 이른바 꽃뱀에 해당한다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널리 공개되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상처를 준 행위는 변호사 품위손상에 해당(변호사법 제24조의 1, 제25조 위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사라변호사가 위 결정에 이의신청하여 변협에서 재심사 중</li> </ul>	<p>완료 (2019.5.20)</p>
6	<p>오름엔터테인먼트 형사고소 건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위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li> <li>-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의하면 연예 기획사는 법률 상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임사라 변호사가 대표로 있었던 광도원 소속사인 오름엔터테인먼트는 법률상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의 불법업체인 상태로 운영됨</li> <li>- 대표이사인 임사라와 오름엔터테인먼트가 함께 처벌됨</li> </ul>	<p>완료 (2018.10.15)</p>
7	<p>임사라 민사소송 건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손해배상 청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지방법원(2018가단220106)에서 소송계류 중</li> <li>- 판결 선고만 남겨둔 상태에서 임사라변호사가 소송제기 후 1년 2개월만에 갑자기 '변협에서 받은 과태료 200만원 및 위자료 5,000만원' 등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변론재개되어 소송 진행 중</li> <li>- 가명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재판부에서 피해자 특정을 위하여 실명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여 실명으로 전환함</li> <li>- 2019.11.7. 의정부지원에서 18년 전 성폭력으로</li> </ul>	<p>계류 중</p>

		<p>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처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기대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범죄 관련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법제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람</li> <li>- 형사사건에서 가명으로 조사를 받고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가명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법제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람</li> <li>- 현재 소송계류 중</li> </ul>	
8	<p>임사라 대전지방검찰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사라 변호사가 SNS에 '대전지역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생긴 후 첫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되었다', '2년 동안 대전 지역 성범죄 사건의 3분의 1 이상이 제 손을 거쳐갔다', '한 달에 50건 이상 사건을 했'다고 주장</li> <li>- 정보공개청구 결과,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생긴 후 '첫 국선변호사'가 아니라 '도입된 지 3년 후'인 2016.8.에 국선변호사로 선정되었고, '2년간'이 아니라 2016.8.부터 2017.7.까지 '1년간' 활동하였으며, '한 달에 성폭력사건만 50건 이상'이 아니라 '1년간' '성폭력사건 및 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하여 '54건'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됨</li> </ul>	<p>완료 (2018.6.)</p>
9	<p>악성 댓글러 형사고소 건 (모욕죄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사라 변호사의 피해자들에 대한 '꽃뱀' 관련 글이 SNS에 게시된 후 쏟아진 언론기사에 대한 악성 댓글러 105명을 형사고소</li> <li>- 검찰 수사 후, 벌금형,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즉결심판 회부, 소년보호사건 송치, 기소중지, 무혐의 등으로 처리됨</li> </ul>	<p>완료 (2018-2019)</p>
10	<p>하용부 형사고소건 (성추행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극단 연희단 소속 하용부의 여성 단원에 대한 강제추행에 대하여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됨</li> <li>- 하용부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li> <li>- 하용부는 국가무형문화재 68호 밀양백중놀이 보유자(인간문화재)였으나, 2019.7.12. 문화재청</li> </ul>	<p>항소심 계류 중</p>

		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함으로써 인간문화재 자격이 박탈됨	
11	하용부 민사상 손해배상	- 현재 1심 소송계류 중	계류 중

### 3. 이윤택 사건과 2차 피해의 현황과 과제

대부분의 성폭력사건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윤택 사건 피해자들 또한 다양한 형태의 2차 피해를 경험하였다. 피해자들은 2차 피해로 인하여 수많은 정신적 고통을 경험해야 했다. 피해자들은 2차 피해에 대하여 담담히 대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법적인 대응에 나서기도 하였으며, 병원 치료를 받거나 휴식기간을 가지는 등 다양한 형태로 그 후유증을 감내하며 고통받아 왔는데, 그 중 대표적인 2차 피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연희단거리패 내에서의 2차 피해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함께 일해 온 연희단거리패 내에서도, 여전히 연희단거리패에 남아서 연극을 계속하고자 하는 단원들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경계와 외면, 고소취하 종용이나 악성 루머 등의 2차 피해가 지속되었고, 실제로 이윤택을 형사고소한 피해자 중에는 이들의 종용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견디기 어려워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취하한 피해자도 발생하였다.

또, 연희단거리패를 거친 선배들 중에는 이윤택의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의식하여 어떤 형태건 피해자를 지원하거나 동조함으로써 자신들에게 돌아올지 모르는 연극계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격려나 지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아예 외면하고 말았고, 이러한 외면은 후배들인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와 좌절이 되었다.

나아가, 연희단거리패를 거쳐간 남성 선배들은 여성 후배들이 이윤택으로 인

한 장기간에 걸친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동안 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다시 한번 시달려야 했으며, 주변인들로부터도 그러한 따가운 눈초리로 인한 2차 피해를 경험하였다.

연희단거리패를 거쳐 간 수많은 여성 단원들은, 적극적으로 미투운동에 동참하지 못한 이들조차 '연희단거리패 출신 여성단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윤택으로 인한 성폭력 피해자'라는 주홍글자가 새겨지는 2차 피해를 경험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법적 제재에 나선 선후배 피해자들을 부정적으로 대하거나 '가까이해서는 안 될 위험한 존재'로 바라보는가 하면, 같은 연극계나 가족, 지인들로부터 '연희단 출신이라면 모두 이윤택 성폭력 피해자 아니냐'는 편견 어린 시선을 감내해야했고, 그로 인한 불편함이나 고통을 호소한 이들도 많았다.

#### 나. 동종업계인 연극계 내에서의 2차 피해

피해자들이 연극계의 거장으로 알려진 이윤택에 대한 미투운동 전면에서 나서면서, 연극계에서는 이윤택의 위력을 의식하여 다양한 형태의 2차 피해가 발생하였다.

사건 초기에 미투운동에 동참한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그들이 출연하고 있던 연극무대에서 하차할 것을 종용받아 연극무대를 떠나거나, 남아 있더라도 논란의 한가운데에서 힘겨운 눈치 보기를 경험하며 고통을 하소연하였고, 이는 소규모 개인 뿐 아니라 국립극단같은 국가기관에서조차 피해자들에 대한 불이익이 자행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연희단거리패 출신 단원들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연희단거리패 출신'이라는 단어가 동종 업계에서는 엄청난 실력과 능력을 인정해주는 대명사처럼 통용되었지만 미투 운동 이후에는 절대 입에 담아서서는 안 될, 무대에서 퇴출되어야 할 우선 순위로 인식되어 자신의 출신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었고, 실제로 많은 단원들이 연극무대를 떠나거나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이러한 악영향을 경험한 다른 극단 출신들이나 연극인들은 피해자들을 격려해주고 지지해 주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더 이상 연극계 내에서의 미투운동

을 해서는 안된다'는 나쁜 선례를 경험하게 되었고, 어느 분야보다 성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연극계 내에서의 미투운동이 연희단거리패의 뒤를 이어 활발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 다. 피해자들의 가족, 지인들, 직장에서의 2차 피해

종래의 성폭력 피해자들은 가족이나 지인들, 직장에서는 일체 모르게 본인 혼자서만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미투운동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얼굴과 실명을 공공연히 드러낸 채로, 파급력이 엄청난 인터넷 매체인 자신의 sns를 통하여 이를 알리거나, 기자회견을 통하여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 결과, 미투운동에 동참한 피해자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신을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공공연히 알리며 가해자의 만행을 고발하였고, 그로 인한 지지와 편견 등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피해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 모두와 소속된 직장마저 피해자들의 전면적인 미투운동으로 인한 엄청난 후폭풍을 경험하여야 했다.

피해자들은 우리나라 연극계의 거장이자 대부인 이윤택의 상습적인 성폭력 범행을 폭로함으로써, 자신을 키워준 스승에 대한 배신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자괴감에서부터 그동안 무의식 속에 밀어 넣어두었던 성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한꺼번에 의식 위로 나타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 속에서 힘들어 해야 했다.

또한 주변의 비난과 수근거림, 꽃땀 논란 등으로 인한 불면증과 악몽, 불안, 공포 증세 및 직장을 잃음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경험하여야 했고, 고소 초기단계부터 연계된 신경정신과 및 상담기관에 지속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면서도 일부는 수차례 자살시도를 하거나 주변과 연락을 끊고 고립되거나, 직장을 잃거나 연극을 포기하거나, 미투운동이 나비효과가 되어 일상의 어려움을 겪는 등 다양한 2차 피해를 경험하였다.

## 라. 임사라 변호사와 꽃뱀 논란으로 인한 2차 피해

피해자들과 같은 연희단거리패 출신인 곽도원 영화배우의 1인 기획사인 오름 엔터테인먼트 대표 임사라 변호사가, 가해자 이윤택이 구속된 직후인 다음날인 2018. 3. 24. 느닷없이 자신의 SNS에 '이윤택 피해자 중 4명이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 돈을 요구하는 꽃뱀'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언론과 같은 내용으로 인터뷰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투운동에 대한 '꽃뱀'논란이 심화되어 미투 운동에 동참한 모든 피해자들의 순수성에 의심을 가지게 하고, 모든 언론 기사마다 수많은 악성댓글들이 나타나 미투운동 피해자들을 한꺼번에 꽃뱀으로 취급하며 악플을 다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나 악영향이 커지게 되었다. 이에 공동변호인단은 임사라 변호사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오름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등 여러 가지 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임사라변호사가 소속된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진정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임사라 변호사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대전지방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미투운동이나 성폭력사건에 대한 검찰의 성인지 감수성을 의심해 마땅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위 기관들의 기소유예 처분의 이유는 동종 전과가 없고, 게시한 글이 실제 있었던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고소인단을 '꽃뱀'으로 적시하지는 아니였고, 게시한 글을 곧 삭제하였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검찰에 대한 정보공개결과에 의하면 임사라 변호사가 sns에 남긴 글 중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로서의 경력'은 모두 허위, 과장된 것으로서, '한 달에 50건 이상의 성폭력 피해사건을 국선 변호함으로써 꽃뱀임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로서, 피해자들이야말로 전형적인 꽃뱀'이라고 단정 지어서 게시한 것은 다분히 피해자들을 폄훼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기재한 것임을 간과한 처분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녹취록에 의하면 곽도원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줄테니 나오라고 하여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들 중 한 명이 교통비 정도의 돈을 언급한 적은 있으나 다른 일행들이 즉시 돈이 필요없다고 거절한 사실이 수차례 드러나고 있고,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할

만한 언행도 없었으므로 임사라 변호사가 게시한 글은 실제 있었던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게시한 글을 삭제한 것과 무관하게 이미 언론에 의하여 일파만파로 모두 다 공개되어 그 후유증이 상당해진 상태이므로, 검찰이 들고 있는 기소유예처분 이유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임사라 변호사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선변호사 보수를 받으면서, 국가에서 인정한 성폭력 국선변호사로서 1년이나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성폭력 피해자들을 꽃땀으로 매도하여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고, 불법으로 연예기획사 대표로 활동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으로 대한변협으로부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이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피해자들과나 우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사과하거나 반성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들로 인하여 대한변협에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니 200만원을 배상하고, 위자료 5천만원을 달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뻔뻔함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은 기소유예처분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임사라 변호사의 SNS나 관련 언론 기사에 댓글을 달았던 악성댓글러들 조차 벌금형이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즉결심판 등의 처벌을 받았던 점이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한 점 등을 감안 한다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도 아닌 단순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도 심하게 반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대전지방검찰청과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임사라 변호사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결정한 것은 우선 이들 기관이 미투운동이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성인지감수성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임사라 변호사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1년간 국선변호사로 활동한 변호사'라는 점을 감안하여 자신들이 소속된 기관에서 활동한 변호사라는 사정을 감안하여 너무 관대하고 온정적인 처분을 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 **마. 언론이나 sns 등 인터넷을 통한 2차 피해**

피해자들이 sns를 통하여 이윤택에 대한 미투운동을 알리기 시작한 직후부터, 언론이나 sns에서 미투운동에 대한 지지와 격려, 비난 등의 온갖 형

태의 보도와 댓글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는데, 다행히 임사라변호사의 sns 글 게재 직후 외에는 거의 대부분 격려와 지지가 주를 이루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도 많은 위안을 받고 힘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을 향한 비난이나 음해, 신상털이, 현재 출연 중인 연극에 대한 비난글, 단순한 악성댓글 등은 여전히 존재하였고, 심지어 피해자의 결혼 사진까지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하였다.

이에 법률지원단은 피해자들과 함께 심각한 악성댓글러 105명을 선별하여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악성댓글러들은 벌금형,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 다양한 형태의 처벌을 받기도 하고 반성문을 작성하고 직접 고소인 대리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과하기도 하는 등, 반성과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 바. 수사기관이나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이윤택 사건 피해자들의 미투운동이 국민적인 분노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진행된 결과,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전담 수사관과 수사검사, 전담재판부를 통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피해자나 피해자를 지원하는 변호인을 통하여 절차와 관련된 적극적인 소통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배려해 주었고, 다른 어떤 사건보다 신속하게 수사하고 재판한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다만, 임사라 변호사와 관련된 대전지방검찰청과 대전고등검찰청은 단 한번도 피해자들을 조사하지도 않고 기소유예처분이라는 무성의한 처분을 한 점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또한, 제1심인 서울지방법원 민사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피해자의 증언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를 다양한 방법까지 제안하며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와 이윤택을 1미터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앉게 조치하면서 그 사이에 병풍으로 경계만 구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둔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숨소리와 헛기침 소리까지 들으면서 시종일관 증언을 해야했던지라, 다시 한번 트라우마를 경

험하며 매우 힘든 심리상태를 겪어야 했고, 이러한 증언 방식은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남게 되었다.

#### 4. 결 론

가. 우리 사회를 한동안 강타했던 미투운동이 시작된 지 어느덧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그 최전선에서 우리나라 연극계의 대부이자 최고의 실세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이윤택을 상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자살의 전부를 드러내 투혼한 피해자들의 당당함과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내고, 피해자들과 함께 해 준 변호인단과 공동대책위원회, 시종일관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고 성원해 준 우리 사회 대다수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나. 미투운동의 본질이나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후유증을 간과하고 임사라변호사에게 기소유예처분을 의결한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산하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은 '성인지감수성'을 의심받아 마땅한 결정으로서,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끼친 물의나 악영향,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 등을 볼 때 검찰이 미투운동에 동참한 피해자들의 피해와 고통을 외면하고 미투운동의 본질을 더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이에 검찰이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하여 좀 더 철저한 교육과 기준 마련을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피해자들이 임사라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정의로운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해 본다.

다. 연극계내의 미투운동이나 미투 운동 피해자들에 대한 폐쇄적이고 소극적인 반응은 여전히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피해자들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거나 불안해 하거나 연극무대로부터 퇴출시킬 것이 아니라, 성폭력 가해자들을 발붙이지 못하도록 퇴출시키는 작업에 연극계가 앞장서야 하며, 힘들더라도 이윤택 사건 피해자들이 끝까지 당당함을 잃지 않고 실력으로 연극계를 지키고 있으면서 연극계의 미투운동 확산과 성폭력 퇴출 문화가 정착되도록 앞장서기를 당부드린다.

라. 언론과 인터넷의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는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는 상대

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느끼는 2차 피해는 여전히 상당하며, 이를 위해서 2차 피해가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언론 보도나 악성댓글러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적 대처를 함으로써 좀 더 건전한 언론, 인터넷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마. 피해자들의 2차 피해인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좀 더 지속적이고 적극적이고 전국적인 단위에서 보다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의료체계 및 상담체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전문성도 구비되기를 바란다.

바. 무엇보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말하기'에 대해,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들, 지인 및 국민들을 포함한 우리 사회가 미투운동이나 성폭력에 대한 '성인지감수성'을 가지고 응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 어느 기관보다 검찰청과 법원이 성인지감수성에 민감하고,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한 처분을 하고, 언론 및 인터넷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피해자를 적극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문화를 만듦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보장 및 치유에의 밑거름이 되고, 우리 사회가 성폭력 없는 사회로 거듭 날 수 있게 될 것이다.

## 여성혐오와 위계의 공모를 깨는 피해생존자의 감각

이산(본 공대위 활동가,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은 오랫동안 은폐되어왔던 이윤택 성폭력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2018년 2월, SNS와 언론매체를 통해 이어지는 사건 소식들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함께 분노했던 연극인들의 모임으로 시작되었다. 극단 연희단거리패는 규모가 크고 이윤택 예술감독의 명성이 높은데다 워크숍 참가를 통해 단원이 되면 숙식을 제공받으며 연극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연에 출연할 기회를 찾고 있는 젊은 연극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참가를 고려해보았을 정도로 인지도 높은 극단이었으며, 이윤택은 연극, 영화, 드라마에 걸쳐 다수의 작품 경력과 수상 경력을 가진 연극계 인사였다. 많은 연극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자 자신들의 동료와 선후배가 활동해온 한국의 대표적인 극단 연희단거리패에서 상습적인 성폭력이 은폐되어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과정은 아직도 많은 연극인들에게 현재진행형이다.

이 글에는 성폭력상담활동가로서, 배우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4명의 연극인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담았다. 이윤택 성폭력 사건은 고소인단과 변호인단, 지원자들의 노고로 이윤택의 법적 처벌을 이끌어냈지만, 연극계 종사자들에게는 성폭력이 지속되었던 구조를 밝히고 개선해나가야 하는 길고 긴 과제가 남아있다. 이 과제를 꾸준히 수행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이 힘을 나누고자 발제에 참여하게 되었다.

### 성과는 집단에게 돌아가고 책임은 개인이 진다

“극단에 들어가실 마음을 먹으셨으면 고생할 각오가 되어야 합니다. 웬만한 각오로 막연하게 극단에서 들어가서 해야지라는 어쭙지 않은 생각하시게 되면 배우도 되기 힘들 뿐더러 인생이 뒤틀리는 삶 또는 연극에 대한 열정이

금방 식어버리실 겁니다.”

2004.3.18. 네이버지식in에 올라온 '연극배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kuro\*\*\*\*의 답변

위의 답변은 네이버 지식in 사이트 이용자 한 명이 쓴 것이지만, 그 내용은 연극작업현장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되풀이되어온 내용이다. 위 답변자가 말하는 '고생활 각오'는 무엇일까. 노동강도가 강하거나 노동시간이 길거나 체계적인 교육훈련시스템이 없는 직업은 너무나 많다.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지 않으면 돈을 충분히 벌 수 없거나, 보람을 느끼는 기회가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가능하다. 그런데 고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인생이 뒤틀리는 삶'이 온다고 한다. 게다가 어떤 직업이든 막 시작할 때는 서툴고 막연할 수 밖에 없는데 막연한 생각, 어쭙지 않는 생각은 무엇일까. 이 답변은 그 간의 연극제작진이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노력없이 스태프이나 배우가 주어진 상황에 최대한 빨리 실수없이 적응하기만을 요구해온 시간의 결과이자, 그 요구를 뒷받침하는 생각이다. 연극은 여러 영역의 노동을 필요로 하며, 주어진 장소에서 한정된 시간 동안 관객을 만난다. 무대에 등장하는 인물 수만큼의 사람이 필요하며, 희곡을 쓰는 사람, 장면을 연출하는 사람, 투입되는 세트와 소품, 기계 장비를 만들고 관리하는 사람, 관객이 공연정보를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관람을 위한 절차를 담당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이 같은 프로젝트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일정과 연락을 담당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동시에 움직인다.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협업하는 만큼 변수가 많기에 충분한 공유와 논의 시간이 없다면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으며,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업무가 된다. 적은 자원과 시간을 투입하여 대규모의 공연을 만들고자 할 때는 문제해결과정이 최대한 빨라야 하며, 이 때 필요한 것은 매뉴얼과 시스템을 만드는 대신 의사결정권을 가진 연출가 1인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변수가 발생하는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이다.

“어떠한 굴욕이나 채찍이 와도 그것을 견뎌내지 않으면 넌 약한 사람. 쓸모 없는 사람. 아주 대놓고 그런 취급을 했다. 오선생이 배우를 괴롭히는 건, 어느 날 연습을 하는데 한 씩, 한 동작을 가지고 여덟 시간을 디렉팅한 적이 있다. (중략) 배우들 간의 괴롭힘은 말 그대로 니가 식구가 되려면 니가 이 괴로움을 견뎌야 돼, 라면 오선생이 연습 때 던져주는 건 은혜라는 거다. 지금

극단 나와서 대성한 선배들 다 저걸 겪었다는 거다. 상 탄 사람들 다 저걸 겪었다, 오선생은 배우로 싹수가 없는 사람은 저런 트집 잡지 않는다면서.” (C, 극단 목화에서 7년간 단원생활)

“이제 자기가 스타된 줄 안다, 눈에 보이는 게 없냐. (중략) 나중에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았는데 찾은 건 신경도 안 쓰고. 너가 챙기지 않았다. 책임지지 않았다.” (A. 연희단거리패에서 1년간 단원생활)

실수는 100% 개인의 원인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여 필요한 정보가 미처 안내되지 않았거나 한 사람이 너무 여러 가지 일을 맡아야 할 때, 사전 리허설을 부분적으로만 했거나 아예 하지 않았을 때, 무대장치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실수가 발생하기 쉽다. 눈에 띄지 않았던 다른 영역의 실수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자신이 일한 결과가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긴장 때문에 원인이 생기기도 한다. 이런 모든 오류나 실수를 개인의 역량부족을 돌리며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문화가 만연할 경우 단원들은 사실상 실수의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릴 것을 강요받게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구성원을 만들기 위해, 업무 수행을 위한 시스템은 발달하지 않고 개인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규범이 발달하게 된다.

“그 돈(지원금)이면 정상적 프로세스로 작업하면 충분히 예산을 쓰고 배우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개런티를 줄 수 있는데 그 돈이 항상 모자란다. 연습 첫날 연습실에 세트를 짓고 그 세트를 지었다 부숴다를 공연 끝나는 날까지 한다. 의상을 지었다 없앴다 지었다 없앴다를 공연 직전까지 한다. 아무리 많은 돈을 받아도 충분치 않다. 그 과정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겪기 때문에 두 달 연습하고 보름 공연해서 20만원을 받아도 당연한 거다. 보통 오선생이 학교 수업을 하니까 오후에 연습을 한다. 4시쯤 시작하면 10시에 끝난다. 중간 밑으로(입단한 순서에서 중간 이하부터 막내까지)는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컵을 닦고 연습을 하기 위해 서너 시간 전에 온다. 걸레만 20개. 대걸레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불문율이 있는데 선배들이 만든 전통이다. 대걸레로 닦으면 공력이 쌓이지 않는다면서.” (C)

극단 연희단거리패와 목화는 세트, 소품, 의상, 코러스 등을 갖춘 대규모 공

연을 다수 제작해왔다. 대규모 공연이기 때문에 많은 공공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음은 물론이다. 성과는 극단과 연출의 것이었으나, 책임은 단원들의 것이었다. 단원들의 수고를 덜 수 있거나 불안을 줄일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지지 않았고, 대신 어떤 부당한 상황에서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며 시스템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실수에 대해서도 개인이 책임을 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 통제의 수단 : 활동기회 박탈의 위험

스텝과 배우들이 공연 준비 과정에서 과도한 책임을 지고 희생하게 되는 이유는 좋아하는 연극을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배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다. 연극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클수록 집단에서 배제되어 연극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감각은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다음은 이윤택의 2011년 저서 [영혼과 물질 - 이윤택 연기론]에서 '2-8. 배우와 연출과의 관계' 중 일부이다.

'그래서 연희단거리패의 배우는 연희단거리패의 성격을 규정짓는 극작 연출가(이윤택)와 의식의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의식의 통일성이 전제됩니다. 왜냐하면 연희단거리패의 성격을 결정짓는 연출가 이윤택의 의식은 곧 배우의 존재양식을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 이윤택의 연극적 관점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엔 연희단거리패의 배우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연희단거리패의 분명한 특성이고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가능한 다양한 연출을 만나고 다양한 작품을 만나고 싶은 배우들의 욕망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결코 저는 그런 배우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윤택과 연희단거리패의 의식을 선택하고, 그 의식을 표현할 수 있는 배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식의 동반자'라는 것은 마치 같은 지향을 가지고 예술적 세계관을 함께 구축해나가는 이상적인 관계인 듯 보이나, 그 내용은 결국 이윤택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불평없이 충실히 수행하는 단원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작품과 작업환경을 접해보면서 경험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욕망은 연극에 대한 관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윤택과 연극을 보는 관점이 일치한다고 해서 이윤택 외의 다른 연출가와 연극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이다. 모든 배우는 이윤택의 의식을 표현해야 하며, 이윤택은 배우의 의식을 고려하지 않

는다. 이러한 일방적인 관계가 이윤택이 말하는 '동반자'이며, 이 '동반자' 관계는 언제든지 이윤택의 뜻에 의해 단절되고, 이것은 이윤택의 변심이나 고압이 아닌 퇴단하는 단원의 '배신'이 된다.

“이윤택 입장에서는 배우들이 들어오거나 나가기를 반복하지만 일적으로 충성하는 애들은 배신을 안 한다는 거다. (중략) 사건이 하나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본인이 그렇게 해석하면 기정 사실. 모든 극장에서 아침시간에 조회를 할 때마다 제가 거론되는 거다. ○○이는 배신할 아이야, 이런 식으로.” (A, 연희단거리패에서 1년간 단원생활)

“(나를) 그렇게 예뻐하던 이유 중 하나가 ○○ (활동을 오래해온 단원의 친인척) 이랑 제가 사귀었다. 이윤택이 보기엔 제가 가족. 핏줄로 가족인거다. 그런데 제가 헤어지니까 너는 사람도 쉽게 버리는데 극단도 버릴 수 있는 애라고 저를 엄청나게 미워했다. 배신자인 거다.” (B, 연희단거리패에서 2년간 단원생활)

단원 활동을 하면서 쌓아온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활동기회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위협적인데, 박탈당한 것이 아닌 '배신'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것은 더욱 위협적이다. 활동하면서 쌓아온 다른 단원들과의 관계나 다른 곳에서의 연극작업 기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로 퇴단하는 단원들은 다른 단원들로부터 '이 바닥은 좁으니 언제 (이윤택을) 만날지 모른다'는 위협과 조연의 경계를 오가는 말을 들어야 했다.

## 외부의 명성과 내부의 위협으로 강고해지는 위계

이윤택이 대규모의 극단을 운영하고 다수의 작품을 연출하며 거장의 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단원들의 의심을 누르기에 충분했으며, 성추행과 성희롱이 정말 훈련에 도움이 되는지 이윤택에게 되묻는 것은 곧 퇴단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폭력으로 해석할 수 없었다. 침묵을 강요하는 구조와 그 구조의 규모를 볼 수 없는 상태인데다 자신의 극단 내 입지가 달려있는 문제이기에,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일삼는 사람이 연극계의 거장이라는 명성을 가질리는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극단을) 나가는 사람은 말을 못하고 이윤택이 자기 맘대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중략) 연기지도 하다보면 터치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랑 내가 어떻게 작업을 하겠니라고 말했다. (나간 단원이) 저한테 잘해주던 선배였다. 그런데 그 때는 무슨 말을 해도 내면화하는 상태여서, 그 사람(이윤택)의 생각과 말이 곧 저의 가치관이라서. 아, 나도 여자배우인데, 선생님이 그런 뜻이 있으신 것도 아닐텐데 그 사람이 예민했구나, 나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예민하게 굴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다.” (B, 연희단거리패에서 2년간 단원생활)

“가슴을 이렇게 (양손으로 가슴을 쓰다듬는 동작). 그 때까지는 괜찮았다. 저도 소리 내는 게 잘 안되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서라도 (소리가 잘) 나오면... 하고 생각했다.” (A, 연희단거리패에서 1년간 단원생활)

“소문은 엄청 많아서. 들어가기 전에도 사실 소문이 있었다. 그런 소문 들었을 때 소문도 이랬다는 아니고 이랬다더라의 소문이니까. 아무 일 없는데 소문나지는 않을 거고. 하지만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과장되었는지는 모르니까.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이 집단이 유지가 어떻게 되지가 너무 의문이었다.”(A, 연희단거리패에서 1년간 단원생활)

“내가 아는 교과서에 나오는 대가들인 건데 너무 말도 안되는 루머 아닌가 생각했다. 성폭력 구조에 대해 나는 너무 순진했다. 들리는 얘기로는 누가 뭘 만졌고 오태석이 옆에서 어떻게 했는데 만졌고. 직접 겪은 당사자에게도 들으니까. 이게 진짜라고? 만졌다는 게 뭐지? 실감이 안 나고 비현실적.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를 여러 사람이 했다는 건 신뢰도 있는 얘기이고 증언인데.” (D. 서울예대 극작과 졸업)

이윤택과 오태석의 성폭력은, 집단 내에서 피해가 있어도 이를 성폭력으로 해석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당황스러움, 놀람, 모멸감, 불쾌함은 감각했으나 흘려보내거나 억압해야 했다. 주변에 다른 단원들이 있는 경우에 이 억압은 더 강했는데, 목격하고 있는 단원들 역시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반응’으로 보이는 침묵과 자기 통제가 피해자에게 더욱 압박으로 다가왔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듣고 있지만 그냥 웃고 떠들고 혹은 시선은 나한테 있지만 웃고 떠들고. 이런 것들이 나 스스로도 그들한테 동화되어서 그래 이건 아무것도 아닌거야, 이런 의식의 흐름이 아니면 그 상황을 버틸 수가 없다.” (A)

“그런 상황이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는데 저는 이게 아니겠지,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계속 한 것.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안마를 굉장히 많이 하고 매일매일 안마하는, 안마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런 의도라면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는 게 안마가 아닐 수도 있지않은가. 그런 생각을 절대로 못하겠는 거다.” (A)

“엄청 당황스럽고 이게 실수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겠는데 말을 못 하겠더라. 아무렇지 않은 듯. 지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옆에 ○○ 선배도 있었는데 저 사람도 아무렇지 않아 하는 걸 보니 이건 아무렇지 않아야 할 일이구나.” (B)

“공공연하게 ‘그렇지 뭐,’ 이런 분위기. 술자리에서 술버릇 안 좋고 그런 게 공공연하게. (질문자 : 어쩔 수 없는 일?)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그냥 눈치껏 그 옆에 가지 않고 눈치껏 피하고.” (D)

## 여성혐오와 위계의 공모

2018년 연극계 미투 운동이 활발해진 이후, ‘연극계 내 성폭력’의 발생원인과 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낮거나 없는 인건비와 장시간 다방면의 노동, 한 순간에 기회를 박탈당할 있는 수직적 권력 구조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배양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 환경에서 여성에게 더해지는 억압은 ‘문란한 여성’이라는 낙인과 결합된 환상, 즉 ‘여배우’의 성이 자원으로 거래될 수 있다는 환상이다.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사회적 경제적 자원의 격차가 엄청난 이성애 관계를 미화해왔으며, 여성 배우가 남성 스폰서나 제작자의 요구에 의해 성관계를 맺고 배역을 받는 것이 마치 물건이나 금전을 교환하는 거래처럼 당사자들의 몸 밖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단순화된 이미지가 만연하다. ‘문란한 여성’ ‘유혹자 여성’에 대한 여성혐오로 점철된 포르노그래피적 이미지는 피해자 비난에 박차를 가하며 가해자를 보호한다.

“오선생이 젊을 때 만난 선배들은 선생과 제자가 아니니까, 호칭은 선생님이 라고 각뚝하게 했지만, 오선생의 성희롱 성추행, 심지어 그 집에 가서 반 살림을 차리는 일이 많았는데 그 때마다 거기서 데리고 나오고 오선생에게 직언하고, 이 친구(여성단원)를 내보내지 않으면 다 나가겠다고 하면서 누르고 멱살도 잡고 그런 일들이 꽤 있었다고 들었다. 선배들의 서사 밑바탕에서 그 여배우는 극단의 위계질서를 해치고 선생을 유혹하길 마다않는 유해한 존재로, 오선생은 그 유혹에 굴복해버린 젊고 혈기 왕성한 예술가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다. 선배들이 유혹에 빠진 연출가를 빼내야했다는 식의 무용담이었던 것.” (C)

“제가 누구 선생님 (옛날) 사진을 봤다 장난 아니다 너무 예쁘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사진 속 주인공과 다른 선배) 이 ‘그렇다 예뻐다, 예뻐서 이 쌤(이윤택) 이 가만 안 뒀잖아.’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을 한시도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게, 뭘 시켰다는 건지, 경계가 모호했다. 그래서 사모님이 그 선생님을 싫어했다 라고 하더라. 그런 상황의 여자선배가 또 있었다, 당시에.” (A)

성폭력을 ‘더럽다’ ‘문란하다’라는 혐오의 정서와 결합시켜 성폭력피해여성을 비난하고 성폭력의 폭력성을 지우려는 가부장제의 전략은 사회 구성원들이 성폭력 피해의 통합적이고 구체적인 서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떨어뜨린다. 이윤택 성폭력사건 보도 중 다수가 성추행을 ‘안마’로 표현했는데, 심지어 ‘성기 안마’라는 표현이 기사 제목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안마’라는 단어에는 강제성이나 폭력성이 들어가지 않는다. 2018년 연극계 미투운동이 활발해진 이후 생긴 부작용 중 하나는 가부장적 연극계 종사자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조차 성폭력을 ‘미투’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성폭력의 폭력성이나 피해의 심각성을 건너뛴 채, 성폭력이 사건이 아니라 폭로가 사건인 것처럼 다루면서 가해자가 이 폭로로 인해 상실하는 지위나 명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도왔다. 가해자가 보전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자원과 ‘문란한 여성’에 대한 환상이 결합되면, 성폭력피해자는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해가 과연 ‘피해’인지 자신이 ‘동의’한 것인지 스스로를 검열하게 된다.

이윤택과 오태석 성폭력사건의 피해자들은 피해를 견디고 참아 넘길 것을

직접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강요받았다. 마치 성적 접촉조차 단원들이 극단에 투여한 시간과 노력과 돈의 연장선인 것처럼 취급되었다. 그러나 성폭력을 견딘 피해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감사나 존경이 아닌 낙인과 비난이다.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가부장 사회의 몰이해와 위계가 공모하여, 성폭력이 일상화되고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현실을 낳았다.

“가슴이 아픈 지점이다. (중략) 선배들이 ‘오선생은 이윤택이 아니잖아, 오선생이 너희 와서 (자기 옆에) 앉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 그런데, 그렇지, 오선생이 앉으라고 안 했지. 니네가 앉으라고 했잖아. 오죽하면 제 후배들이, 제 밑에 여자애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극단 단원이 되겠습니다 들어왔던 후배가 두 명이 있었는데, 개네가 ‘선배님 가서 담배 좀 피고 오세요. 제가 앉아있을게요.’ 내가 자기들을 부르지 않으니까. 그랬던 적도 술했다.” (C)

“선생님은 성적으로 병이 있어 그런 거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사람들은 다 충격적이라고 그런 일이 있는지 물렸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더 충격적이었다. 그런 사람이라는 건 조금만 봐도 안다. 그 사람은 성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한 건데.” (B)

### **환상을 부수고, 피해생존자의 감각으로**

성폭력상담을 하다보면 ‘이게 성폭력이 맞는지’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자신이 겪은 일이 정말로 성폭력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뜻이 아니다. 몸이 도구화되며 인격이 침해되는 감각, 모멸감과 불쾌감은 피해 여성에게 생생하게 남는다. 성폭력이 맞냐는 질문은, 이 감각을 토대로 가해자의 행위를 성폭력으로 해석했을 때, 이 해석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협상가능성을 타진하는 과정이다. 주변의 그 누구도 자신의 해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다고 느끼면 고통을 감수하며 해석을 시도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느낄 수 있다.

성이 접대의 수단이 아니며 다른 자원과 교환될 수 없다는 것은 윤리나 도덕에 관한 명제일 수도 있지만 현실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성은 인격에 통합되지 않고 분리된 상태로 다룰 수 없으며, 성적 접촉은 물리적인 면서도 정서적인 상호교환이다. 성은 자아와 분리하여 증여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나의 자아를 통합적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과의 상호교환은 폭력을 동반한다. 일방적인 성적 접촉의 매 순간은 접촉에 담긴 멸시와 함께 감각되며, 거부반응이 역치를 넘는 순간 가해자의 물리적 힘이나 위력은 어김없이 행사된다. 위계를 이용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상대가 성적 접촉을 요구할 때 상대 여성이 동의했다면, 그 여성은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성적 접촉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예상했다면 그 어떤 행동도 동의로 해석할 수 없다. 그 누구도 기습성, 압력, 위협, 멸시, 상해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극계 성폭력 피해여성의 이야기는 보다 적극적으로 발화되고,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해석되고 번역되어야 한다. '여배우'의 '성접대'에 대한 가부장적 환상을 부수는 목소리가 이어져야 한다. 안락한 고급 숙소에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가 비밀리에 안온한 성적 관계를 맺은 뒤 주연에 캐스팅되는 여배우의 이야기는 신화일 뿐이다. 설령 누군가 겪는 일이라 해도 그것은 여성 연극인들의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가해자와 가해를 묵인하는 이들의 합리화와 정당화를 넘어서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술자리에서 옷속으로 불쑥 들어오는 손, 제압하는 물리적 힘과 무게, 주물럭거리거나 파고드는 손가락, 불쾌하도록 축축한 혀, 술에 취해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거칠게 움직이는 몸, 자기 자신의 욕구에 취한 눈빛, 이해할 수 없는 격분이나 낮은 목소리의 위협이 지닌 폭력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연기지도, 연습, 훈련, 마사지, 그 어느 것도 작품 안에서 성적인 장면을 구성하기 위해 철저히 계획되고 면밀한 약속의 절차를 거치며 그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폭력임을, 설령 이러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더라도 폭력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성이 다른 자원과 거래 또는 교환이 가능하다는 허상과 여성혐오적 포르노그래피의 환상을 깬, 불편하지만 필요한 침해의 생생한 이야기가 연극계 곳곳에서 발화될 수 있는 환경이 점차 만들어지기를 바라본다.

## 생존자의 관점에서 만들어보는 연극계의 문화, 규정

김수희(공동고소인단)

---

이윤택 성폭력사건을 마무리하며 토론회를 마련한다는 말씀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힘든 과정을 함께 했던 피해당사자들을 대신해 저에게 발제를 부탁하셨을 때 저는 퍼뜩 성범죄자가 너무나 쉽게 현장으로 돌아오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어떨까 생각했고 바로 수락했습니다. 발제문의 마감기일을 확인하니 한 달이나 시간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쓰겠구나 했습니다. 그러나 한 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복잡하고 머리는 멍해졌습니다.

어떤 내용도 합의되지 않은 제 개인 의견일 뿐인데 피해당사자를 대표하는 글로 읽히면 어쩌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제 글로 피해당사자분들이 상처를 받거나 피해당사자의 권력으로 보여질까봐 조심스럽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지금의 심정에 대한 제 얘기를 드러보자 결론 내리고 글을 시작하려 합니다.

2018년 2월 그저 사과하고 반성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2005년의 기억을 더듬어 제 개인 페이스북에 이윤택의 성추행 관련 글을 썼습니다. 다음날 바로 기사가 났고 뉴스에는 제 사진까지 보도되며 실검 1위라는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당혹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나 고민이 시작되기도 전에 극단 선, 후배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패닉상태에 빠져있는 저에게 잘 한 일이라며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는 일, 추가 피해사실을 더해 고발한 일, 조사 및 공판의 순간 서로의 손을 잡으며 기도했던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갑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윤택 사건 피해당사자들은 함께 했습니다. 죄지은 자에게 온당한 벌을 내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는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희는 하나 되어 대응했습니다.

우리가 몸담았던 연희단거리패가 더 이상 오명으로 유지되지 않기를 바라며 연희단거리패 출신이라고 배제되거나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되었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떠오른 과거의 기억 때문에 고통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꽃땀으로 매도되어 비난받고 고소당했던 일, 수의를 입고 법정에서 앉아 있는 가해자의 무덤덤한 얼굴을 처음 바라봤던 날, 피해당사자가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변의 가혹한 충고. 아무렇지 않게 재판장을 진행하다가도 수시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 순간들이 힘들고 지난했습니다. 우리가 아닌 누군가에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와의 연대를 부탁하며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없었더라면 그 순간들을 어떻게 지나올 수 있었을까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7년형이라는 중형을 받고 가해자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던 날 이제 끝나나 보다 안도했습니다. 그 짧은 행복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아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모 출판사가 희곡전집을 내면서 이윤택의 희곡도 4편을 함께 묶어 출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판사는 이미 2014년에 초판이 나왔던 터라 특별한 기획회의 없이 재출간한 것이라며 안일하게 응대했습니다. 저희는 출판사 편집장과 수차례 통화를 하고서야 겨우 회의 후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하염없는 기다림은 어떤 만족스러운 결과도 안겨주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체득한 터라 결국 출판사로 찾아갔고 저희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아직 형을 다 하지도 않은 범죄자의 책을 출간하는 것은 감옥에 있는 그를 경제적으로 돕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의 복귀에 대해 담론의 과정 없이도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이 행위가 현장에서 활동 중인 피해당사자들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일인지. 다행히 출판사는 저희의 입장에 공감해주셨고 책을 모두 회수하는 한편 절판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이윤택의 죄질은 나쁘지만 그가 연극계에서 이뤄낸 업적과 작품들을 봐서라도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구명운동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서명운동을 벌이겠다는 모선배님의 말씀을 전해들었습니다. 이 구명활동 역시 선배들 사이에

서만 피어오르다 동조하는 후배그룹이 없어 지지부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도 질문을 받습니다. '죄는 죄고 작품은 작품이지. 벌 받고 있으니 그의 공연들은 따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은 참 무책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가해자를 그만 잊고 용서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면전에서 하시는지. 판결을 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7월 판결이 나서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범죄를 저지를 때 '내가 이러다 공연을 못하게 될 수도 있을텐데 이래도 되나.' 생각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형을 마치고 나왔을 때 그때라도 피해당사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러고도 관객이 그의 공연을 작품으로 봐줄지, 다시 현장에 복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그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쯤 복귀가 가능할지는 그에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한 번도 피해당사자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판사에게 제출하는 반성문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친다며 감형을 호소했을 뿐입니다.

형사재판이 끝났는데도 제게는 이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끔찍하게 싫습니다. 어떻게든 평생 저를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니 몸서리가 쳐질 지경입니다. 사람들 기억에서 완전히 잊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단단한 사람도 아니고 계획적이지도 못하고 이성적이지도 않은데 이 일은 배우를 캐스팅하거나 난해한 장면을 무대에 구현하거나 의상의 재질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닌 제 감양 밖의 일들이라 매일이 고단합니다. 질문 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만나는 하루가 하루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성범죄자들의 현장복귀에 대해 인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예술적 측면을 반영하면서도 그 방식과 시기에 대한 조심스럽고 섬세한 접근을 위한 건강한 담론을 생성할 수 있도록 연극계 내 뿐만 아니라 전사회적으로 공론화해 나가자 호소할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모여 계신 모든 분들이 정성을 다해 귀담아 들어주실 것은 자명했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직 피해당사자들, 아니 제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의 일상찾기

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제 주장이나 의견이 그들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윤택 성추행 사건의 최초 미투자'라는 입장에서서는 더더욱 어떤 이야기도 조심스럽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발제를 고사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것은 우리의 응원 때문이었습니다. 방법이 없어, 벽에 부딪혀서, 혼자인 거 같아서 무서워졌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됐다면 힘 내지 말고 쉬라고. 피해당사자분들이 전화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조심스러워 발제를 거절했었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이 그러했듯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었던 일로 치부할 수도 없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면 우리와 함께 상의해나가며 할 수 있는 일을 할 따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 드러난 일들과 드러나지 않은 일들, 제 극단과 공연 관련 일들을 차분히 진행해나가려고 합니다.

첨예한 논쟁들, 발전적인 제안, 보안해야할 제도들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꾸준히 계속 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계속 노력해주고 계시니까요.

마지막으로 너무나 애쓰고 노력해주신 변호사님들과 활동가님들, 연대해주신 개인분들과 단체에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듣는 일에 지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말하는 일에 지치지 않겠노라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발제 6]

## 내가 지나온 수사·재판과정, 그리고 정의

이재령(공동고소인단)

---

---

2018년 2월 19일 연락이 된 우리들이 한 집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에서 그럭저럭 평탄한 삶을 지내고 있는 개인들이었습니다. 불과 일주일만에 삶이 뒤틀린 상태를 뒤로하고, 어색하게 또 반갑게 웃으며 안부를 전하고 나서 당일 오전 이윤택의 기자회견 이야기를 시작으로 아직은 조심스러운 이야기들을 조금씩 꺼내놓고 진실의 조각들을 알아내고 확인하고, 분개했습니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각자의 집에서 부들부들 떨며 밤을 지새운 일주일.

우리가 각자 생각했던 것 보다 우리의 과거는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과거들을 살기 위해 왜곡시켰고, 잊고 있었습니다.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진실의 기억과 깊은 봉인되어 있던 감정에 우리는 오열했습니다.

과연 이제 아무렇지 않게 단 하루라도 나아갈 수 있을까? 대답은 “노” 였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진행하고, 개인의 삶을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바로잡아야만 했고, “내”가 아닌 “그녀”를 위해 연대하였습니다.

다행히 좋은 뜻으로 저희를 물심양면 도와주신 훌륭한 여러 변호사님들을 만났고, 사회생활에 더딘 예술가들이 진실의 법정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수 십명의 선후배 동료분들께서 증언과 진술서를 보내주시고, 수많은 단체와 예술가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려는 행동을 시작해주셨고, 많은 분들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전국으로 선후배님들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명의 동료들이 각자의 동료후배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피해사실에 대해 묻고 기억을 꺼내었습니다. 하나의 작은 피해가 더해질 때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울면서 지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걱정이 되었던 점은 연희단거리패라는 팀에 대한 '애정'입니다. 늘 모든 분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 팀을 사랑했고 행복했던 추억이 있기에 우리처럼 느끼는 모든 동료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 이름이 먹칠이 되지 않길 원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피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거의 2년이 지난 지금은 그것 또한 어리석은 나의 착각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재판과정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도 많았습니다. 진술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없도록 수 십명에게 설명하고 다시 설득하고, 용기를 내어 준 피해자들이 한 명씩 경찰에게 진술을 할 때마다 쓰러지지 않도록 매번 함께 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하고 밤새 함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우리는 얼굴을 내밀며 인터뷰를 진행했고, 많은 분들이 함께 연대해주셨습니다.

저는 고소장을 접수하러 가던 날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든 여론과 주변인들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일이었고, 하루라도 더 빨리 일들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 인것만 같아서 열심히 도와주시는 분들을 많이 재촉하고 안달내고 있었습니다.

빨리 진행해서 빨리 승리하고 우리의 정의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 때는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뒤 없이 달렸습니다. 여기까지의 2주가 마치 몇 개월이 된 듯, 숨 쉴 틈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증언하러 가는 날은 가장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가림막 바로 뒤에 앉아 헛기침을 해대며 증언을 함께 듣고 있던 이윤택과 말도 안되는 질문을 해대는 이윤택측 변호사를 감당해내야 하는 사람은 오롯이 증언자 본인이었습니다.

공소시효 때문에 기소되는 사람이 3분의 1로 줄었지만 우리는 매 비공개재판마다 들어갈 수 없는 법정앞에서 법원 1층에서 증언자를 두 세명이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증언을 마친 '그녀'를 만나 함께 밤을 지새우며 그들의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것을 우리는 마주했습니다.

처음으로 후회도 되었습니다. 함께 힘을 내었지만, 만약 혼자라면 아무도 이것을 감당할 수 없겠다고 느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두 달여간의 재판과정을 겪는 당시에 더 많은 기억들이 살아나면서 과거의 기억들이 계속 재생되고 다시 우리를 그 고통의 시간 속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재판은 우리들에게 좀 더 세세하고 정확한 기억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속에 지워낸 기억을 하나하나 더듬어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앞뒤순서가 어땠는지 기억속으로 들어가 찾아내려고 애쓰는 과정은 엄청난 감정적 희생을 수반합니다. 그러다보면 가만히 청소를 하다가도 불쑥 불덩이같은 하나의 기억과 순간이 떠오르고 그것이 우리를 오랜 시간 여러 가지 감정으로 괴롭힙니다. 비단 증언자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났고, 우리는 상담센터와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이 웃고 떠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엄청나게 시끄럽게 떠들고 재미난 추억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몇 명의 집에서 모여 밥을 해 먹고, 여러 가지로 힘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지쳐 쓰러지면 달려가서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응원해주는 분들도 많았지만 오해도 많았습니다.

이윤택을 제거하고 기득권을 차지하려한다, 피해도 없는 주제에 나서서 관심을 사려고 한다는 등. 이윤택은 자신에게 불복하거나 본인이 생각할 때 걸리는 부분이 있는 사람을 단원들에게서 배제시키기 위해 많은 짓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정신이 이상하며 나쁜 사람이 되도록 매도하고 소문을 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마찬가지로 남은 동료들에게 본인을 내세우고, 자신을 고소한 우리들을 이상하게 소문내도록 했습니다.

경상도에서 서울에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스스로 버티고 지켜내기도 힘든 우리에게 고통은 가중되고, 누군가의 한마디에도 점점 예민해지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모든 것을 대중에 이야기하고 싶지만, 진실이 서로의 살갓에 얼마나 생채기를 내는 일인지 알기에 우리는 입을 닫게 되었습니다. '답답함'이라는 고통이 추가되었습니다.

결국 세 번의 재판을 거쳐 7년형.

이 과정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우리의 연대만이 아니라, 작은일 하나하나에 올바른 대응을 알려주시고, 상처받는 일이 최소화 되도록 연명하고 힘써주신 공대위여러분들과 바로 저희 곁에서 격려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주신 변호사님들입니다.

한 분 한 분 뵈 때마다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의 눈빛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일일이 적지도 못할 감사의 순간들이 헤집어진 마음에 진정 힘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약 1년 9개월의 시간이 지나오면서 우리의 삶은 내외적으로 전과 완전히 달

라져 있습니다.

일을 중단한 사람,  
전과 아예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  
전과 같이 꾸준히 활동하는 사람,  
여러 가지 다른 활동으로 움직이는 사람,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것은 다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은, 개인의 성향과 선택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전과 분명 다를 것입니다. 지금은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마음 깊이 응원  
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정의를 이루면 나아갈 수 있을 거란 저의 믿음은 실패였습니다.  
'나아가기 위한 정의' 가 아니었습니다.  
'지켜내기 위한 정의' 였습니다.  
저희가 정의를 이룬 일은 우리의 삶을 조금은 지켜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또 다른 수많은 괴로움을 오히려 맞닥뜨릴 것이고,  
이제부터의 정의는 각자의 몫입니다.  
저도 저의 방법으로 또다시 정의를 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윤택 성폭력사건 대응의 의의와 쟁점 토론

김영옥(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상임대표)

---

오늘 토론회의 의제 중에 나는 특히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려 한다. ‘의의’에 대해서는 앞선 발제들이 많은 시사점들을 던져주었으며, ‘쟁점’을 말하다보면 결국 ‘의의’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 1. 한국사회 성문화와 문화예술 정체성의 착종

어떤 곳에서 어떤 경위로 일어나든 모든 성폭력을 관통하는 한국사회 성문화의 특성이 있다. 성문화는 가부장제 문화 이데올로기 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매우 복합적인 구조물이다. 한국사회 성문화는 특히 더 그렇다. 여기에는 압축적 근대화 와 산업화, 민족주의와 발전주의 그리고 가족(중심)주의의 착종, 개인중심주의<sup>1)</sup> 등이 견고한 토대가 되고 있다.

그런데 예술문화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는 이것 외에도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과도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모든 인식이 오인을 필연적 구성요소로 갖지만, 문화예술 이해에서 이 구성적 필수인 오인은 문화예술 실천 전체를 심각하게 훼손시킨다.

문화예술은 지각이나 감각에서 출발해 지각이나 감각으로 작업한다. 이들 작업들은 삶의 환경에 대해, 자아와 타자에 대해, 마지막으로 지각이나 감각 자체에 대해 표현하고 발화한다. 먹고사는데 필요한 구체적 재화나 사물을 생산하고 이용하는 일과 달라 문화예술을 생산하고 이용하는 일에는 언제나 ‘애매모호함’이 내재한다. 문화예술이 언제나 계급과 얽혀있을 뿐 아니라, 규범이나 가치, 제도 등 상징계의 질서에 복종하고 또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할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의 이러한 ‘애매모호한, 유동하는’ 정체성 때문이다. 작업 결과를 두고 판단을 내릴 때, 결여와 잉여 사이 어디쯤에서 기준점을 잡을 것인가는 매번 ‘무엇이 문화

---

1) 나는 개인중심주의로 시민과 주민으로서 자율·자치권과 책임을 지는 개인이 아닌 이기적 생존과 번영을 주장하는 개인을 중심에 두는 관계관을 의미한다.

예술인가'를 새롭게 질문하는 일이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을 묻는 질문의 답으로 제시되는 것들은 모두 '불화의 요소'를 제거하고 순치시킨 기존 이데올로기의 반복 재생일 뿐이다. 질문은 '문화예술은 무엇을 하는가'로 바뀌어야 한다. 문화예술은 사람과 사회를 키운다, 키워야 한다(고 나는 말하고 싶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시적으로 합의하든 안 하든 문화예술은 밥과 등가적인 의미와 필연성을 지닌다. 문학으로, 미술/아트로, 연극으로, 춤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상상력과 표현의 세계가 넓어질수록 우리의 자아 역시 그만큼 크다. 문화예술이 사계절의 자연풍광과 똑같이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복지 국가의 중요한 실천 항목이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양식의 성격이다. 문화예술은 다른 어떤 텍스트보다 이중적인 나선형의 성격을 띤다. 선물인 동시에 독이기도 한 것이다.<sup>2)</sup> 우리의 자아를 확장시키는데도, 편협하게 쪼그라들게 만드는 데도 문화예술만큼 효과적인 장치가 없다.

이윤택 사건을 비롯해서 연극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문화예술 창작과 소비/향유를 침윤하고 있는 이 선물/독의 구조적 역설의 성격을 어이없도록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잘 가꿔진 정원의 반질반질한 돌 하나를 들춰더니 그 밑에서 온갖 구더기들이 들끓고 있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돌 밑의 세계를 알거나 짐작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돌 근처에 가는 것을 꺼려했고, 누군가 돌을 들추려 하면 서둘러 막곤 했다는 것이다. 돌 밑에 따리를 틀고 있는 저 추한 세계는 앞서 언급한 한국사회 성문화의 특성들과, 그것을 자양분 삼아 자라난 '한국식' 문화예술의 중첩된 모순과 위선을 뻔뻔하게 자랑하고 있다. 압축적 근대화와 산업화, 민족주의와 발전주의 그리고 가족(중심)주의의 착종, 개인중심주의를 반성 없이 뒤섞고 있는 이윤택 식 (그리고 오태석 식) 한국-민족-연극이다.

한국도 세계문화강국이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 그러나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극단 연희단거리패와 극단 목화는 가부장제적으로 이해된 민족주의 '훈'으로 연극을 했다. 이것이 탈식민 추구하고 실천이었을까? 극단 연희단거리패와 극단 목화는 (출신학교를 중심으로 하든, 연극 내부자가 되고자 원하는 사람들로 모였든) '가족'이었고, 이 가족은 군대식 권위주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가장이 이끌었다. 혈연가족보다 더 가족중심적이었던 이 가족 안에서 가장은 '왕/신'이었다. 가족인 이 극단 내부에서 가족 구성원인 단원들은 아버지/왕/신의 예

2) 독일어에서 명사 Gift는 선물, 그리고 독을 의미한다.

술관을 따르고(‘의식의 동반자’), 아버지/왕/신의 지도편달을 받아야 했다. 위력에 따른 성폭력은 자유의사가 제압당함으로써 발생한다. 한국연극계의 두 남성이 꾸린 가족왕국에서 ‘문화예술의 이름으로’ 반복된 ‘지도편달’의 ‘의례들’은 수행적으로 ‘자유의사의 제압’을 ‘자발성이나 예술에의 열정’으로 의미화시켰고, 이로써 가족왕국이 존속되었다.

“어떠한 굴욕이나 채찍이 와도 그것을 견뎌내지 않으면 넌 약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아주 대놓고 그런 취급을 했다. **오선생이 배우를 괴롭히는 건, 어느 날 연습을 하는데 한 씬, 한 동작을 가지고 여덟 시간을 디렉팅한 적이 있다.** (중략) 배우들 간의 괴롭힘은 말 그대로 니가 식구가 되려면 니가 이 괴로움을 견뎌야 돼, 라면 오선생이 연습 때 던져주는 건 은혜라는 거다. 지금 극단 나와서 대성한 선배들 다 저걸 겪었다는 거다. 상 탄 사람들 다 저걸 겪었다, 오선생은 배우로 싹수가 없는 사람은 저런 트집 잡지 않는다면서.” (C, 극단 목화에서 7년간 단원생활, 강조는 필자)<sup>3)</sup>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훌륭한’ 문화/예술의 가치판단을 내리는가? 이 가치판단이라는, 임의로 그어졌으나 오랜 시간 반복된 의례를 통해 ‘진실’로 굳어진 금은 누구를 내부인으로, 외부인으로, 혹은 확실한 내부인이 되길 간절히 기다리는 잠정적 내부인으로 만드는가? 등등의 질문을 발생시킨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문화예술은 (생활세계적) 감각에서 출발함과 동시에 (생활세계적) 감각을 벗어난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문화예술의 이 이중적 나선구조의 정체성은 우스꽝스럽고 파괴적인 주의주장의 알리바이에 먹히고 만다. 특정인들이 작당해서 생활세계적 감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감각을 문화예술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또는 그들이 이해한 생활세계적 감각 자체가 너무나 생활세계와 동떨어지거나 생활세계를 왜곡하는 것이어서, 폐해가 더욱 심해진다. 사랑이니, 욕망이니, 민족이니, 삶과 죽음이니, 모성이니 등등 극단 연희단거리패나 극단 목화가 무대에 올리고 상을 받으며 ‘찬탄’을 받은 주제들은 생활세계적 감각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것들이다. 이 주제들은 그러나 민족주의적 가부장제 젠더 관점에서 느껴지고 이해되어 펼쳐진다. 생활세계적 감각의 일방향적 이해,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오인이 아닐 수 없다. 이 오인이 실제로 연극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여성)배우들에게도 젠더권력으로 작동할 것은 ‘미투’ 이전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만큼 어찌면 ‘논리적’이다. ‘문화예술의 이름으로’는 신물이 날 정도로 지긋지긋하고 낯은 구실임

3) 본 토론회의 이산님 발제문에서 인용.

에도, 이 문구가 새겨진 깃발을 들고 ‘전위’의 자리와 대가/거장의 자리를 주장하는 ‘작당들’이 있다. 역설도 아니고 모순도 아니다. 적폐일 뿐이다. 이 적폐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 2. 누가 보호하는가?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의 어려움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 이윤택 성폭력사건 판결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안희정 성폭력사건 판결에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나 아니냐는 핵심 논쟁이었다. 자의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 준수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 하에, 독일 형법 제177조제5항제3호의 “보호 없이 행위자의 영향 하에 놓인 상황”에 대한 판단기준을, 위력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기준으로 제시하는 연구들이 있다고 한다.<sup>4)</sup>

“보호 없이 행위자의 영향 하에 놓인 상황” - 나는 이 문구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 여기서 ‘보호’를 하는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전유하기 위해 인용된 독일법의 이 법률조항에서 내가 가장 묻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생략된 주체였다. 폭력의 상황이 있다. 폭력을 행사하(려)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은 확실히 이 상황 속에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가해 행위를 막고, 한 사람의 피해를 막아줄 저 ‘보호’를 행하는 주체는 분명하지 않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 이편과 저편의 감각이 너무나 지독하게 다르다. 이편에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말하는데, 저편에서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간극을 두고 우리는 우선 ‘이런 간극을 용인하는 사회가 있다’고 말해야 한다. 이윤택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은 성폭력이 다른 단원들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발생했기에 더욱 ‘폭력’으로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말한다. 폭력의 목격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폭력의 암묵적 동조자 내지는 적극적 조력자가 된 사람들이 과연 그 자리에 있었던 그들뿐인가. 이 사회가, 혹은 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모두가 저 ‘보호 없이’에 연루되어 있는 것 아닌가. 또 다시 묻게 된다. 누가 ‘보호’의 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에 폭력이 발생하는가. 법 자체인가, 국가인가, 사회인가, 문화인가. ‘보호자가 없는’이 아니라 ‘보호 없는’ 상태에서 성폭력이 발생한다. 이 피해에 가해자의 몫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각성도 중요하지만, 윤리의 차원에서 일어난 이 각성을 문화정치의 현장에서 실체가

4) 안경옥(2015),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판단기준 및 형법상 성범죄규정의 개선방안. 경희법학 제50권 제4호, 205-31쪽; 류부곤(2013), 미성년자 등 간음죄에 있어서 ‘위력’의 의미, 형사법연구 제25권 제1호 참조. 장임다혜,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구조와 ‘위력’에 의한 성폭력 쟁점”에서 재인용.

되게 만들려는 모색들이 따라야 한다. 예술문화는 근본에서부터 허구다. 허구라서 권력실체가 될 확률이 더 높다. 허구가 성적 자기결정권과 노동권과 인격과, 무엇보다도 잘 하고 싶은 일의 '빛나는 의미와 가치'를 파괴하고, 그 일에 대한 열정을 무기력한 노예적 길들임으로 추락시키는 일을 '함께' 막는 일은 '자율과 자치, 책임'을 존중하는 '시민/개인'으로서 우리 모두의 정치적 행동이 되어야 한다.

# 이윤택 성폭력 사건 판결의 의의와 향후 변화를 위한 고민

장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1.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및 상습강제추행 유죄 판결의 의의

○ 문화예술계 등 특정 커뮤니티에서 형성되는 권력을 강제성인 '유형력'으로 인정

-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들의 공통된 주장: 피해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동의"한 것이며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다.  
→ 형법상 성폭력 범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 '폭행·협박'이라는 유형력이 있고, 그 유형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피해자의 저항 제압(최협의 폭행협박)에 있으므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 행위 당시 피해자의 저항 또는 (최근에는) 거부 의사 표시를 요구함. 기존의 법리 하에서 당시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거부하지 않았다며 곧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없었다는 주장이 인정되어 "폭행협박이 있었으나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는 판례들이 존재함.
- 권력형 성폭력의 공통성
  - 업무상 지위로 인한 권력을 넘어선 특정 커뮤니티에서의 막강한 권위에 기초한 권력형 성폭력은 해당 커뮤니티의 용인과 묵인 속에서 유지·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장기간 반복·지속되는 성폭력 피해: 한 명의 피해자가 아닌 다수의 피해자들이 존재하며,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 가해행위의 특성을 보임. 권위를 인정하는 커뮤니티 내부에서 이러한 가해행위를 용인하기 때문에, 가해의 양상은 장기간 지속되며, 더욱 확대되는 경향성을 보임.
  - 성적 침해만이 아닌 다각적인 침해양상: 성적인 폭력의 형태 이전부터

노동권, 인격권에 대한 반복적 침해행위가 존재하며, 한 명의 피해자가 노동착취, 신체적 침해, 성적 침해, 모욕 등 인격 침해를 모두 경험하게 될 수 있음.

- 커뮤니티 내 권위와 권력은 곧 자원과 기회의 배분에 대한 결정권한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한은 커뮤니티 내부에서 침해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가로막는 주요한 요소가 되며, 피해자가 얻게 되는 자원과 기회에 대해 주변인들이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가 형성되기도 함.

-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로서 '유형력'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는 행위 당시 폭행·협박과 같은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나 피해자의 저항 또는 거부 의사 표시만이 아니라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특정 커뮤니티에서의 권위와 권력 등 영향력과 결정권한을 기초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다시 말해, 특정 커뮤니티에서 가지는 가해자의 영향력과 결정권한 등은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제한하는 환경을 형성하므로, 이를 '유형력'으로 포섭해야 함. 이윤택 성폭력에 대한 사법적 해석은 이러한 기초에서 마련됨.

→ 1심은 이윤택의 성적 침해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하며, 기습 추행(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이 "추행행위가 반드시 상대방이 알아챌 겨를도 없이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으며 "폭행행위가 곧바로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이 행사"되는 것에 해당한다며, 기습추행 법리를 확장하고 있음. 기습추행의 문제로 이윤택 성폭력을 이해하는 것에는 권력형 성폭력의 속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 그러나 이윤택 성폭력의 핵심이 기습성이 아닌 권력형 성폭력에 있다는 점을 2심에서 확인하였음: "피해자의 당시 연령, 피고인이 연극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권한, 연희단거리패 단원들에게 공동생활이 요구된 사실,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피해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안마를 해주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상습성 인정을 통한 권력형 성폭력의 특성 반영한 형량 결정: 특정 커뮤니티 내 권위에 기초한 권력형 성폭력의 지속·반복의 특성이 상습성으로서 형사사법적으로 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임을 확인함. 이윤택 성폭력 사건에서 성적 침해행위 유형이 삽입이 아닌 신체접촉 행위라도 지속반복되었다는 점을 상습성으로 포섭하여 가중처벌한 점은 권력형 성폭력의 문제를

상습성으로 가중한 선례가 될 것임.

○ 권력형 성폭력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반영한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

- 특정 커뮤니티 내 권위를 통해 형성된 권력에 의한 성적 침해 등 다양한 침해에 대해서 커뮤니티 전체의 용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침해행위가 있었던 당시 혹은 그 이후에 이에 대해 당사자에게 거부하거나 문제제기를 하기란 거의 불가능함. 이러한 환경 속에서 피해자는 사건 이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식으로 피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잊거나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하기도 함. 이러한 점은 피해자 진술에서의 신빙성에 대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음.
- 이윤택 성폭력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에게 보였던 긍정적인 태도 등에 대해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를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진술 번복 내지 진술 오류에 대해 “피해사실 외의 사소한 부분에 대한 다소의 기억 오류”가 진술의 신빙성에 있어서는 배척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음.
- 특히 권력형 성폭력의 경우 문제제기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우려와 합당한 처분 및 재발방지에 대한 불신이 사건 직후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알릴 수 있는 상황이 대부분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윤택 성폭력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고소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황이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음.
- 피해 진술이 유일한 내지 결정적인 정황인 경우에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은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법원의 태도임. 이 때 권력형 성폭력의 특성상 해당 커뮤니티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제기 하지 않음’, ‘가해자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표출함’ 등 소위 피해자다움으로 요구되는 요소와 거리가 있는 사후적인 태도를 권력형 성폭력의 맥락에서 해석하고 진술이 믿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함. 최근 법원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 ‘성인지 감수성’을 요구하는 것 역시 이러한 피해자가 처한 주관적인 상황을 행위맥락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요구임. 이윤택 성폭력 사건의 유죄 판단은 굳이 성인지 감수성이

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에서 피해자-가해자 관계에 대한 맥락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줌.

## 2. 문제제기 이후 2차 피해에 대한 고민 필요

### ○ 문제제기에 대한 2차 피해 맥락: 성폭력을 유지·지속시키는 가부장적 구조와 문화예술계 특성과의 결합

- 문화예술계 특성: 표준화된 노동방식이나 형태나 노동성과에 대한 평가가 존재하지 않는데, 예술의 주관적 가치에 대한 광범위한 신념이 존재하기 때문임. 기존의 문화예술계 내 권위는 예술성이라는 이름으로 네트워크 권력 속에서 형성·유지되며, 전통적 도제식 훈련의 이름으로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한 침해가 정당화됨. 예술의 주관성을 빙자한 권위 형성과 권력 작동으로 체계적인 교육이나 표준화된 근로계약 및 능력/성과 평가는 제대로 시도되기 어려움.
- 예술적 권위와 지위를 타인의 노동권, 성적 자율성, 인격권 등 침해를 개인의 역량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과정으로 용인하게 하는 문화예술계 내의 특성은 권력관계에서 여성들을 성적 침해에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성과평가에서의 배제에 대한 보복, 예술계에서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음모로 전환시키는 기제가 됨. 피해자들의 문제제기가 정당함을 알고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유지될지도 모르는 기존의 권위에 대한 고려 속에서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모른 채하며 침묵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공격에 동참하기도 함.  
→ 이러한 행위들은 사실상 연극계 내 가해자의 권위와 권력의 영향을 유지·지속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재생산 구조의 일환임.

### ○ 2차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 필요

- 임사라 변호사 SNS 게시글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 기소유예 처분과 악성 댓글에 대한 모욕죄 등 형사고소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즉결심판, 기소중지 등 처분 결과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사실상 실패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
- 2차 피해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적극적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및 모욕 등 인격권 침해만이 아니라 성폭력이 발생하는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 조력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사법적인 관점에서 중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12월 25일 시행 예정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는 2차 피해의 범위를 사법절차 이외에 언론보도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신체적·정신적 침해와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로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대책마련 및 조치를 의무로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2차 피해를 초래한 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사법적 수단이 제한되어 있음(형사상 명예훼손 및 모욕, 민사상 손해배상).
- 2차 피해에 대해서 예방적인 목적의 정책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제재 조치의 마련이 요구됨. 예를 들어 정보통신망에서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차단과 차단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제재를 마련할 수 있으며, 2차 피해에 대한 커뮤니티 내 징계 또는 계약상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음.

○ 권력형 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문화예술계의 변화 필요

-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계 내에서 특정한 권위가 막강한 영향력을 기초로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 구조를 변경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계에서 자원과 기회를 독점하는 특정 권위가 형성되지 않도록 자원과 기회의 배분에 있어서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능력이나 성과 평가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기본적인 노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화된 계약 등의 체계를 정착시키는 커뮤니티 내부의 노력이 요구됨.
- 특정 커뮤니티 내 권위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는 내부의 변화와 합의 역시 필요함. 특히 자신의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권력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부과하고 그 권한을 제한해야 할 커뮤니티의 원칙이 마련되어야 함. 성폭력 가해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내부 커뮤니티에서 용인해왔던 성적 침해 등의 관행이 변화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내부 커뮤니티에서 가해자에 대한 책임과 이를 방조해왔던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어떠한 책무를 부과해야 할지, 그리고 커뮤니티 내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원칙을 정립해나갈지에 대해 논의와 합의가 필요함.

< 부록 >

■ 1심 선고 이후 기자회견문(2018. 9. 19)

그 '연극'은 달라진다

2018년 2월, 연출가 이윤택의 성폭력 사건이 피해자의 미투운동을 통해 사회에 알려졌다. 미투운동에 참여한 피해자는 3명, 이후 고소에 이른 피해자는 23명, 사건의 횡수는 62건에 달했다. 이중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는 8명이었고(나머지는 공소시효 만료), 6명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심 공판 중 피고인 이윤택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모집한 연극인 탄원서는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98부가 수합되었다. 그 중 일부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피해가 있음을 알리며 드러난 사건 만이라도 충실한 법의 판결을 받기를 탄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오늘은 법원이 피고인 이윤택의 범죄를 정당하게 처벌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답한 날이다. “징역6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판결!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 헤아릴 수도 없는 성폭력 가해를 해 온 피고인 이윤택이 처벌받기까지 오랜 과정이 있었다. 피해생존자들은 그간 수 차례 언론과 경찰에 전화를 걸었지만 사건은 은폐되어 왔으며, 결국 자신의 일상과 활동에 커다란 여파가 미칠 것을 각오한 몇몇 피해생존자들의 미투운동이 이어지고 나서야 법적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오늘이 있기까지 17명의 피해생존자가 그간 말하지 못했던 피해의 상처를 되새기며 경찰 조사에 임했고, 그 중 8명은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으로 점철된 피고인 변호인의 심문에 온 힘을 다해 대응하며 법정에 섰다. 이들은 학력이 높으면 피고인의 연기지도 방식이 교육받은 바와 달라 반감을 갖는 거라고, 학력이 낮으면 피고인의 지도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공연활동을 현재 하고 있으면 피고인의 성

과를 가져가려 한다고, 그만두었으면 성폭력이 없어도 어차피 활동을 그만 둘 거였다고, 피해 당시에 문제제기를 했으면 문제제기할 수 있었는데 왜 이제 다시 이야기하냐고, 하지 않았으면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제기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악의적인 질문을 받았다. 피고인 이윤택은 법정에 방청 온 피해자들을 쏘아보며 증인석을 가린 차폐막 뒤에서 헛기침을 하며 피해생존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었다.

이윤택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과 그 상습성에 비해 오늘 재판부가 내린 형량은 너무도 미미하다. 우리는 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권력을 이용한 상습적인 성폭력이 만연한 사회에 맞서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피해의 고통을 직면하고 가부장적 사회의 부당한 시선을 견디며 연대하고 싸우는 고소인단의 용기와 힘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이 자리가,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당당한 목소리와 정의로운 판결이 메아리치는 공간이자 성평등한 사회질서를 구현하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8. 9. 19.**

**이윤택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항소심 선고 이후 기자회견문(2019. 4. 9)

**‘오랜 관행’이 아니다. 성폭력이다.**

2018년 2월 한국사회를 뒤흔든 #미투운동의 시작점에서 연극연출가 이윤택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피해생존자들의 용기있는 고발로 2018년 9월 19일, 연극 연출가 이윤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오늘, 1심 선고 결과에 뒤이은 2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1심 재판 당시 피고인 이윤택은 증인으로 진술하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가림막 뒤에서 피해자들이 진술할 때마다 헛기침을 하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고, 본인이 한 행동은 ‘오랜 관행’으로, 결코 성폭력이 아니라며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듯 당당하고도 위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에서마저 ‘오랜 관행’이었던 연기지도가 새로운 시기에 와서 ‘젊은’ 친구들에 의해 성폭력으로 명명되고 자신의 책임이 되었다며, 오히려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되돌리고 위력 성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피고인 이윤택의 법정 진술을 통해 연극계에서 오랫동안 성폭력 피해가 ‘관행’으로 묵과되었던 현실과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피고인 이윤택이 가진 ‘위력’을 다시금 직시하게 되었다. 연극 연출가 이윤택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고 이를 수사재판과정에서 다투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는 총 23명이다.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성폭력 피해 고발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동안 연극계에서 관행으로 묵과되었던 성폭력 피해가 실제 존재하는 피해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피해자들이 다수임에도 그동안 누가 어떤 피해를 경험했는지조차 피해자들 내에서도 공유하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 이윤택이 가진 위력이 강력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력은 피고인 이윤택을 지지하고 보호하려는 그래서 성폭력 피해를 인지하고도 피해자 편에 서지 않았던 수많은 방관자, 동조자들에 의해 관행으로, 연기지도로 둔갑되어 오랜 시간동안 지속될 수 있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미투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연극계 내에서 자행되었던 수많은 성폭력 또한 이제는 성폭력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오늘의 사법부의 올바른 판결을 통해서도 연극계에서 '오랜 관행'으로 자리잡았던 것이 성폭력임이 분명해졌다.

피고인 이윤택은 이제라도 연기지도를 핑계 삼아 성폭력 가해를 정당화하려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성찰하기를 바란다. 자신의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더 이상의 법적 다툼을 멈추고 자숙하며 사법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란다.

그것은 오랜 관행이 아니라 성폭력이다. 이제 우리는 피해생존자들이 당당하게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가해자를 합당하게 처벌하며 일상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그래서 각계 영역에서 오랜 관행으로 자리잡았던 성폭력을 뿌리뽑고, 그것이 가능토록 사회 문화의 변화를 만들어낸 피해생존자들과 굳건히 연대하며 일상의 불평등과 성차별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2019년 4월 9일**

**이윤택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상고심 선고 이후 논평(2019. 7. 24)

**이윤택 전 연극연출가 상습성폭력 7년형 상고심 확정을 환영한다.  
“성폭력·성적착취는 처벌된다. 연극은 나아간다”**

오늘 대법원은 이윤택 전 연극연출가가 행해온 상습강제추행, 유사강간치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에 대해 징역 7년, 8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2월 14일 첫 #Metoo 글을 통해 사회적으로 고발한 지 526일 만이다.

연극계 무소불위의 권위자로 살아온 가해자는 18년간 자행해 온 성폭력과 성적착취를 연극의 일종, 예술의 일환으로 주장해왔다. 가해자는 본인의 행위가 “관습적으로 이어져 온 나쁜 형태의 일”이고 “죄의식을 가지면서도 억제할 수 없었던 더러운 욕망”이었다며 ‘도덕’적 차원에서 반성하면 될 일로 한정했다. 반면 법정에서는 본인의 행위가 성폭력이 아니라 “연극에 대한 열정이자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으로, “연극인의 성/몸에 대한 감각은 달라 일반인은 이해할 수 없”으며 “오랜 관행인데 젊은 친구들이 성폭력으로 명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예술과 연극을 ‘특수화’하고 ‘특수한 권위자’의 위치에서 성폭력을 정당화해왔다.

‘예술’에 대한 이러한 권력적, 일방적, 자의적 해석이야말로 연극을 가로막고 연극인들을 가두어왔다. 예술감독의 힘은 무소불위가 되어 이윤택 전 감독의 상습폭행으로 누군가의 고막이 파열되고, 여성단원의 머리채는 가위로 듬성듬성 잘리고, 극단을 떠난 단원은 다른 오디션에서 막말을 들으며 내쫓겼다고 한다. 십수 년간 자행된 성폭력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던 것은 2010년~2016년, 62건의 사건 중 25건, 25명 달하는 고소인 중 10명이 겪은 성폭력뿐이었다. 이러한 현실이 ‘오랜 관행’이라면, 그 연극은 계속될 수 없다.

오랜 침묵을 깨고 용기 있게 말하고, 고발하고, 증언하고, 맞서 싸워온 피해자

들은, 예술이라는 미명으로 정당화된 성적 착취를 폭로함으로써 새로운 연극과 예술을 불러오고 있다. 미투운동은 문화예술, 교육, 정치, 스포츠, 행정, 종교 등 사회 곳곳의 '미명'들을 부수고, 본연의 의미를 되찾아내고 있다. 피해자들은 연극계, 스포츠계, 종교계, 정치계, 노동계의 생산자이자 주역들로서 새로운 질서와 문화를 만들어가며 서로 연대하고 치유하고 회복해가고 있다.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에서는 수많은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없는 현장을 위한 조사, 포럼, 프로그램을 꾸리고, 관객들은 그에 화답하고 있으며, 성폭력을 단절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을 건언하고 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내온 모든 피해자들, 열과 성을 다해온 변호인단, 힘과 분노를 담은 탄원서 한장 한장을 써주신 98명의 연극인과 관객, 그 연극은 틀렸음을 논증해주신 전문가들, 상습적 성폭력의 특성에 머리를 맞댄 법률전문가들, 미투운동의 힘과 지혜를 모아온 전국의 여성운동단체, 활동가와 여성, 시민들은 오늘을 당연하게 환영한다. 삶은 계속될 것이고, 예술은 더 나아갈 것이다.

**2019년 7월 24일**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이운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139개 단체, 104명 공동변호인단)

**■ 단체 : 전국성폭력상담소(130개소)** 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벨엘케어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례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휴샘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상담센터,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8231;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가톨릭여성상담소, 광명YWCA 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 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산 YWCA 여성과성상담소, 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YWCA 부설 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이왕 가정&#8231;성상담소, 김포여성상담센터,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 가족성상담센터, 연천행복마을상담소,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여성인권센터 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 부설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동해지부 부설 동해가정폭력&#8231;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 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정선아라리가족성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법률구조법대한국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시부아산성상담지원센터, 로템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충주생명여성의전화 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 대전YWCA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바램,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 광주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템성폭력상담소, 새강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포항여성회 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한마을상담소, 거창성&#8228;가족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천성가족상담센터, 진주성폭력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창원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 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 상담소, 함안 성가족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설 부산성폭력&#8231;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성&#8231;가정폭력상담센터, 기장열린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생명의전화울산지부 부설 남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동구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 부설 꿈누리 여성장애인상담소,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 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 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국제문화교육진흥원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장애여성공감, (사)천주교성폭력상담소, (사)탁틴내일,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사)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 공동변호인단(104명)** 강연재, 강영훈, 고승우, 곽항기, 길인영, 김 건, 김기욱, 김동현, 김민아, 김보람, 김연진, 김영미, 김영옥, 김에니, 김용성, 김재희, 김정섭, 김지현, 김태환, 김형일, 김혜경, 나지수, 노종연, 류미선, 문혜영, 박근우, 박보경, 박미혜, 박선영, 박순희, 박소현, 박순철, 박승기, 박영현, 박정현, 박진현, 박현희, 방지영, 백승재, 부성연, 서혜진, 설은주, 성기택, 신고영, 신민정, 신은영, 신지후, 신현식, 신현정, 신현정, 신현호, 안귀옥, 안미영, 안미현, 안서연, 안지희, 양정숙, 엄다솜, 오빛나라, 오지원, 윤채희, 원경주, 윤경록, 이경환, 이남주, 이동규, 이명숙, 이보람, 이소아, 이승재, 이은초, 이주경, 이지은, 이현주, 이현진, 임계완, 임유정, 장경아, 장수혁, 장윤미, 장철우, 정경욱, 정수경, 정호진, 정희경, 조현옥, 조혜인, 차미경, 차미경, 차연화, 천정아, 최경진, 최수영, 최주영, 최현희, 태지영, 하희봉, 한승미, 한주현, 현지현, 홍지혜, 황다연, 황수철, 황혜란

이윤택 성폭력사건 대응의 의의와 쟁점 토론회  
**분노가 지나간 자리, 다시 무대에 서다**

- 
- 발행일 | 2019년 11월 26일
  - 발행인 | 이윤택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 편집 | 김가림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합정동 366-24) 2층  
이윤택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
  - 전화 | 02-338-2890
  - 인쇄 | 카피플러스(02-332-1049)
-